

세계로 **대도약!**
응비하느 전남 행복시대

2023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시대변화와 함께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시 민첩해지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낯선 정책환경 속에서 공직자들 역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군 등 일선기관의 공직자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허가와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들은 향후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 부담감 등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같은 문제 상황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과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군 등 일선기관에서 감수해야 했던 리스크를 도 감사관실이 함께 나눠가지면서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분야별 주요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취지와 운영절차 등을 이해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제1장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7
-----------------------	---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11
-----------------------	----

□ 인·허가 분야	13
-----------------	----

○ 동일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바닥면적 산정 관련	15
○ 관광농원 개발 추진 가능 여부	18
○ 농업진흥구역 내 연구소 구내식당 허가 가능 여부	22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신청 자격 해석 관련	26
○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30
○ 개발행위로 준공된 사유도로의 소수지분권자 사용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34
○ 위반건축물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40
○ 도로에 접하지 않은 임야의 개간 목적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45
○ 현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로로 인정 가능 여부	50

□ 공유재산 분야	57
-----------------	----

○ 행정재산 유휴시설 이용계획 변경 관련	59
○ 공유재산 위탁료 감면 관련	67
○ 착오 등기된 토지 무상양여 가능 여부	70
○ 행정재산(도로, 국유지) 중 개인 점유지 용도폐지 가능 여부	74
○ 용도 지정 매각 일반재산 경매 낙찰자 특약등기 승계 가능 여부	78

□ 조직·인사 분야	83
------------------	----

○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대상 관련	85
○ 재단법인 신규채용 서류심사 평가표 변경 가능 여부	89
○ 청탁금지법과 재단법인 대외활동 운영 규정 중 우선 적용 대상	92

□ **예산·회계·재정 분야** 97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소득사업비 관리 관련 99
-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여부 104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 108
-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 지원 가능 여부 112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및 지원한도 전라남도 자치법규 준용 가능 여부 ... 115
- 2021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방법 120
-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협의회 사업비 직접 사용 가능 여부 125

□ **행정제재 분야** 129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131
-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영업정지 조정 가능 여부 137
- 시내버스 결행 조사결과에 따른 과다지급 보조금 회수 관련 140
- 농공단지 내 군유지 점유 공장 조치방안 관련 145
- 변경허가의 위법성 인지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150

□ **일반행정 분야** 157

- 공익사업 이주대상자 수의계약 토지매각 가능 여부 159
- 도로공사 현장 발생 폐자재(도로경계석) 재활용 가능 여부 163
-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관련 167
-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 가능 여부 ... 175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중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여지 환매 가능 여부 179

부록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규정 18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185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전라남도 훈령) 188

제1장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제1장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1. 도입 배경

- 일선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 처리 사례 발생
-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업무 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법 제시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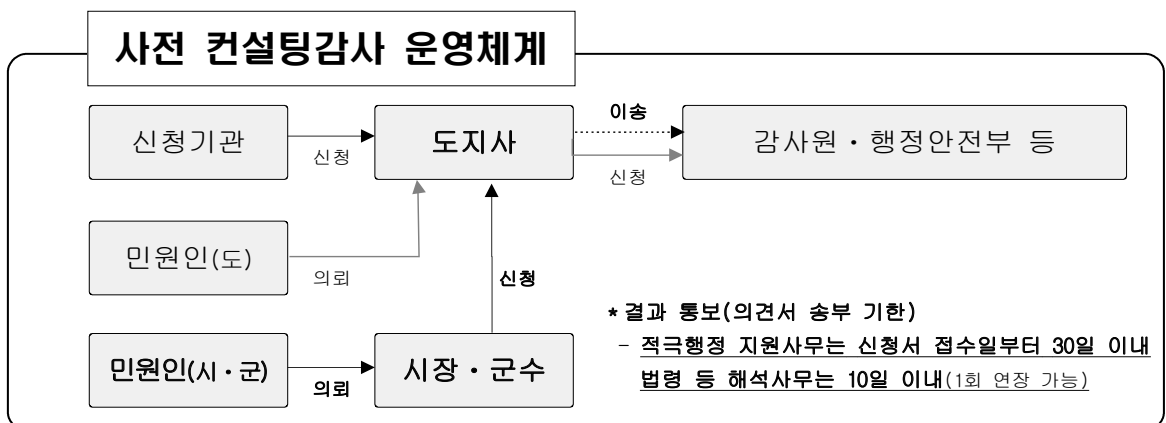
2.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 훈령 제811호, 시행 2022. 3. 21.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훈령 제1422호, 시행 2019. 9. 19. 전라남도(감사관실)

3. 대상 업무

- 적극행정 지원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사무
- 법령 등 해석사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사무
-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처리 절차



5. 적극행정 면책과 연계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관계 등)가 없으면 면책 기준 충족으로 인정

6.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2017년~2023년)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사업	안하
합계	91	66	25	122	30	92	86	61	25	93	60	33	118	61	57	83	27	56	87	39	48
도	12	12	-	22	3	19	9	8	1	20	17	3	22	14	8	3	1	2	6	4	2
목포	6	5	1	6	-	6	4	3	1	4	2	2	3	1	2	4	-	4	1	1	-
여수	8	6	2	10	2	8	6	5	1	7	3	4	9	2	7	6	2	4	7	3	4
순천	4	1	3	6	1	5	4	3	1	6	2	4	5	3	2	4	3	1	2	2	-
나주	4	4	-	7	2	5	5	2	3	6	4	2	5	2	3	4	1	3	3	-	3
광양	5	4	1	8	3	5	4	4	-	6	4	2	8	5	3	4	1	3	3	1	2
담양	3	2	1	3	1	2	3	1	2	3	-	3	2	-	2	3	-	3	5	-	5
곡성	2	1	1	4	1	3	-	-	-	2	2	-	2	1	1	2	1	1	2	2	-
구례	2	2	-	2	-	2	4	2	2	3	3	-	4	4	-	1	1	-	1	1	-
고흥	3	1	2	4	1	3	-	-	-	1	1	-	5	4	1	4	-	4	2	1	1
보성	3	1	2	3	-	3	-	-	-	4	2	2	5	2	3	6	1	5	4	4	-
화순	4	2	2	3	2	1	3	3	-	3	2	1	4	1	3	3	2	1	1	1	-
장흥	0	-	-	3	1	2	13	9	4	3	2	1	6	4	2	3	2	1	7	5	2
강진	3	3	-	3	-	3	3	2	1	4	3	1	6	4	2	1	1	-	4	2	2
해남	4	4	-	4	1	3	2	2	-	3	2	1	1	1	-	3	-	3	3	2	1
영암	3	3	-	3	1	2	3	1	2	1	-	1	2	-	2	3	1	2	5	3	2
무안	4	2	2	6	2	4	4	2	2	2	2	-	2	1	1	5	3	2	2	-	2
함평	3	-	3	4	2	2	6	5	1	3	2	1	5	1	4	7	1	6	5	1	4
영광	3	3	-	4	2	2	4	2	2	1	-	1	6	1	5	4	1	3	3	1	2
장성	4	2	2	3	-	3	3	2	1	3	3	-	6	2	4	4	2	2	7	3	4
완도	5	3	2	6	1	5	1	1	-	3	1	2	5	4	1	4	2	2	9	1	8
진도	2	1	1	5	3	2	3	2	1	2	-	2	3	2	1	4	-	4	5	1	4
신안	4	4	-	3	1	2	2	2	-	3	3	-	2	2	-	1	1	-	0	-	-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시
건명	동일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바닥면적 산정 관련		

1. 컨설팅 개요

○ 건축물 개요

- 규 모 : 연면적 1,600㎡, 지상3층, 1동
- 용 도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세부용도
 -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600㎡
 - (지상2층) 업무시설(사무소) 600㎡
 - (지상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400㎡

2. 컨설팅 요청 사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와 관련,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 모든 층(1층~3층)이 하나의 주계단으로 공동이용되고 있을 때 2층 체력 단련장(400㎡), 3층 골프연습장(400㎡)의 바닥 면적의 합계(800㎡)가 500㎡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주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통로에 해당하여 연계하여 합산하여 면적 산정하는지.

3. 신청기관 의견

(갑설) 연계된 건축물 면적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의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합산하도록 산정하였으므로, 주계단을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연계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함.

(을설) 임차인별로 면적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

- 개정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에서 건축물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된 건축물은 그 구분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다르고 운영 또한 달리하고 세부용도를 연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계단은 통로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별로 면적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근린생활시설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라 되어 있고, 제2호에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구분 소유자(임차인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음.
- ◇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구분건축물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구분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하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구분건축물을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구분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 산정하도록 하는 등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계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 2층과 3층이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의 공동 이용 자체를 연계 사용의 예시인 “통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 그런데 계단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2층과 3층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2층과 3층이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로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계”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규정의 또다른 예시인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와 같이 구분건축물 간 또는 사용자들 간 “연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연계”의 의미는 “연결”을 넘어서는 뜻으로 해석됨.
- ◇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2층과 3층의 임차인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두 명의 임차인이 서로 해당시설들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계획한 사실의 유무, 다시 말해 공동계단이라는 물리적 연결 상태를 넘어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인위적 활동의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순히 주계단으로 연결되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계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2층과 3층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관광농원개발 추진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00군 00면 00리 산 000번지 외 00필지
- 사 업 자 : 000(전남 00군 00읍)
- 사업규모 : 00,000㎡(임야 00,000㎡, 전답 0,000㎡)
- 사업기간 : 2023. 8. ~ 2024. 8.

2. 컨설팅 요청 사유

- 해당 관광농원개발 신청 부지인 00면 00리 산000번지 등 00필지는 2017. 1. 9.~ 2022. 12. 31.(5년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한 부지이며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된 후 2023. 10.31.까지 복구해야 할 부지임.
- 하지만 복구 면적 00,000㎡ 중 일부만 복구하고 00,000㎡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사업계획승인 후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복구의무를 면제 받아 농원부지로 조성하고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로 토석채취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던 농지는 즉시 농지전용착수 사유로 복구 없이 전용 허가를 진행할 계획임.
- 「농어촌 정비법」 제83조에서는 관광농원사업의 대상자를 농업인 및 어업인, 농업 및 어업인 단체로, 동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은 규모 및 시설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했던 임야 및 농지를 복구없이 관광농원개발 부지로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승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컨설팅을 요청함.

3. 신청기관 의견 등

- 「산지관리법」 제39조 3항, 농지민원사례집(2023. 1.)- 문 161에서 임야 및 농지의 토석채취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의 복구를 면제 또는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정비법」 제81조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의 취지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볼 때 개인의 토석채취 후 복구 대상의 부지를 관광농원개발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복구 없이 조성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 농업법인, 어업법인)가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가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 등(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복구의무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석과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농지법」 제37조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여부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이 나열되어 있음.
- ◇ 살펴보면, 본 건의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 후 복구의무가 있는 일부 산지와 농지를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해당부지의 복구 없이 새로이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먼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면 되고,
-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후 산지 복구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가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인지,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복구의무면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한다면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리고 본 사업에 포함될 농지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의무가 있다면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 착수를 이유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00군에서 결정할 사항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농업진흥구역 내 연구소 구내식당 허가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 「전남 00 0000 0000」 시설 개요			
- 위치 : 전남 00군 00면 000로 000-000			
- 현황			
· 「전남 00 0000 0000」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위주의 스마트팜 특화교육,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음.			
· 0000 지원센터는 운영사무실, 빅데이터센터, 강의실, 입주기업실 등이 있는 3층 규모 일반건축물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빅데이터센터와 실증단지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직원, 실증단지 입주기업의 직원과 청년교육생 등이 생활하고 있음			
※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 40여명, 청년교육생(3기 43명, 4기 52명), 청년임대온실 입주 청년농 36명(향후 실증단지 입주기업 및 주민참여 임대온실 입주농 추가 예정)			
2. 컨설팅 요청 사유			
○ 0000 지원센터 1층 일부에 휴게식당 공간이 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음식점 영업허가에 제한이 있어 현재 170여명의 0000 내 활동인구가 식사때마다 외부로 이동하며 매우 불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7항 제10호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내 교육연구시설인 「0000 0000 지원센터」가 조성된 만큼, 지원센터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허가 가능 여부 검토 요청			

3. 검토 결과 및 의견

-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 제4호아목(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자목(일반음식점)·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임.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다목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되어 있음.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교육연구시설인 ‘0000 0000 지원센터’에 구내식당을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운영이 가능하다면 직영이 아닌 위탁용역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 00군에 따르면, 「0000 지원센터」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 위주의 스마트팜 특화교육,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관련기관 직원, 교육생 등 170여 명의 활동인구가 도시락 또는 식사때마다 외부로 이동(인근 면소재지 식당 등 자동차로 10분 거리)하여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내식당 운영 필요성이 있음.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 제4호아목(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자목(일반음식점) 등인데, 「0000 지원센터」는 그 용도가 연구소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함.

-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다목의 정의에 따라 주된 용도

인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당 구내식당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0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그 목적과 기능상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00군에서는 「0000 지원센터」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제8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00군 관계부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0000 지원센터」 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00군은 행정재산인 해당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00군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통해 해당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록신청 자격 해석 관련		
1. 컨설팅 개요			
○ 민원 현황			
- 민원인 A는 0000년 0월 유치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0000~0000년(2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 해당 경력을 근거로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신청서를 00군에 제출함(2023. 00. 0.) - 00군은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교원자격 및 경력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 처리할 수 없음을 안내(2023. 00. 0.) - 민원인 A는 본인이 유치원 정교사로 근무하던 0000년~0000년 당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본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 요건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 - 또한 2004년 법개정으로 학교의 종류에서 유치원이 삭제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등록처리를 반려하는 것은 불리하게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업소개소 등록을 00군에 재요청함(2023. 00. 0.)			
2. 컨설팅 요청 사유			
○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에는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을 갖추었던 자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전 충족된 자격 요건을 근거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기관 의견

-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 검토 시, 민원인의 등록신청 당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교원의 자격은 위 학교별로 교장 및 교감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1]과 [별표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교원자격검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교원의 자격은 원장 및 원감과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1]과 [별표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교원자격검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 「유아교육법」 부칙(2004. 1. 29.) 제5조에 따르면,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 00군(000000과)에 따르면 00군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신청을 한 민원인 A는 0000년 0월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2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고,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에는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부칙(2004. 1. 29.) 제5조에 따르면,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 2급)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 A는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보이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3. 00. 0.에 00군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신청을 한 민원인 A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시
건명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시 ●●읍 일원 마을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1. 개요

【 마을정비구역 지정 예정지 현황 】

- ◇ 위치 : ●●시 ●●읍 ●●리 산000-00번지 일원
- ◇ 시행자 : ■■■■■(주) 대표 ■■■■
- ◇ 면적 : 00,000㎡(주택 00,000㎡, 테마파크 00,000㎡, 진입도로 0,000㎡)
- ◇ 주요시설 : 주택 000세대, ○○○ ○○○ 체험시설(테마파크), 마을 숲 등
- ◇ 사업비 : 000억원(공사비 000, 토지매입 00, 기반시설 00, 기타 00)
- ◇ 재원조달 : 자기자본 투자(민간) + 기반시설 지원(행정)

2. 신청 사유

-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¹⁾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²⁾에 마을 정비구역³⁾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 ●●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정비조합에서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마을정비구역에서 신규마을 조성 등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⁴⁾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3조)
 - 신규마을 조성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지역을 농촌 ‘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따라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불가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주택법 등)에 따른 고발 대상임.

1)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

2)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4)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기존 마을 재개발에 한함) 등

3. 관련 법령 확인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6조·제57조·제101조·제103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00시 00읍 일원 마을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①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이 타당하다면 같은 법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가능함.

·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⁵⁾는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다만, 마을정비조합의 경우에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전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됨.

⇒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8항).

②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마을정비구역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을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따라서 “읍” 지역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가능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농촌”을 읍·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어촌”을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 가능 지역을 “면” 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국비·지방비 등 사업비 지원 대상 지역을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읍” 지역에서도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가능할 것임.

5) ① 한국농어촌공사, ② 지방공기업, ③ 마을정비조합, ④ 시장·군수와 ①, ②, ③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③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이행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개별법에 따른 조치**해야 될 사안임.

-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상담(◇◇◇ 주무관) 결과 :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 가능

상담자	상담 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주무관	·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제1항 본문의 ‘마을정비구역에서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면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 마을정비조합은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하나에 해당 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이 타당하다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가능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제1항은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에 관한 것으로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마을정비조합 설립은 마을정비구역에서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춘다면 설립 인가는 가능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9. (생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카. (생략)

11.~12. (생략)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18. (생략)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의2. (생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4.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3. (생략)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19. (생략)

④~⑦ (생략)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개발행위로 준공된 사유 도로의 소수 지분권자 사용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1. 개요

【 도로 현황 】

- ◇ 위치 : ◆◆군 ◇◇면 ◆◆리 000-0번지, 000-0번지 등 2필지
- ◇ 소유자 : ○○○ 등 10명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목/지적 : 도로 / 000㎡
- ◇ 지목변경일 : 0000. 0. 00.
- ◇ 지목변경 사유 : 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0000. 00. 00.)

2. 신청 사유

- ◇ 건축물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협의)와 관련하여 개인이 개설·소유하고 있는 도로의 지분권자 전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행위허가(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접하고 있는 도로는 기존 주택 건축 시 개인이 개설한 도로이고, 도로의 소유권은 10명이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 도로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해 도로 소유 지분권자 10명 중 8명(9/12, 75%)에게 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지분권자 2명(3/12, 25%)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갑설(50% 이상 사용권 확보)과 을설(100% 사용권 확보) 의견 대립으로 개발행위허가(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갑설	을설
· 사유 도로라 하더라도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개발행위허가 가능 - 사유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례가 다수 있고, 신청인이 지분권 일부를 확보하고 있으며, 50% 이상 사용권 확보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하다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음.	·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적절해야 하기에 100%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하고, 기존 도로가 있더라도 도로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음.

3. 관련 법령 확인

- ◇ 「민법」 제262조·제265조
- ◇ 「건축법」 제3조·제44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3절 3-3-2-1 도로

4. 검토 결과 및 의견

◇ 개발행위로 준공된 사유 도로의 소수 지분권자 사용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이상의 사용 동의를 받으면 가능

－ 해당 도로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 된 것으로 도로의 지분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사용 동의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는 가능

· 「민법」 제262조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법 제265조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유물인 도로를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면 될 것이고, 도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는다면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함.

※ 「건축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3절 3-3-2-1 (4)에 따르면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경우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도로 및 건축 예정 부지 현황 : 건축 예정 부지 사유 도로에 접해 있음.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위치도(◆◆군 제출 자료)	도로 전경(◆◆군 제출 자료)

－ 대법원 판례(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확인 : 공유물 관리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판시 내용	판결 요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임.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사례(2020. 12. 8.) 확인 :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사용 동의 요구를 할 수 없음.

질의 요지	답변 요지
타인이 개설한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진입도로 등을 이용하여 개발행위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 외 도로 개설 및 사용경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사용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안길, 사실상의 사도의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간의 도로 개설과정, 이용 현황, 관련 판례, 지방세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사실상의 도로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의해 사실상의 도로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 또는 도로개설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임.

－ ◎◎도 사전 컨설팅감사 유사 사례(0000. 0. 0.) 확인 : 지분 과반수 동의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가능

신청 요지	검토 의견 요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도로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기존 도로의 공유 소유권자가 도로 사용을 일부 찬성, 일부 반대일 때, 도로 사용에 있어 소유 지분권자의 100% 사용 동의를 필요한지 여부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공유물의 사용수익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과반수 공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기존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도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도 사전 컨설팅감사 유사 사례(0000. 0. 0.) 확인 : 소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

신청 요지	검토 의견 요지
개발행위준공 된 도로 부지 소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사용 가능 여부	- 해당 필지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행위 준공 후 도로로 지목변경된 곳으로 건축허가 신청인은 해당 필지를 본래 목적대로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함. - 이는 공유토지를 이용·개량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건축허가 신청인은 소수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필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 - 다만, 다수 지분권자가 해당 필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 이득의 문제는 다수 지분권자와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5.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④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 (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	· (생략)
다. 도시·군계획사업	· (생략)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생략)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 (생략)

6. 참고 자료 2(관련 지침 발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생략)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생략),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④ (생략)

(5)~(6) (생략)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시
건명	위반건축물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1. 개요

【 영업신고 대상 건축물 현황 】

- ◇ 위치 : ◆◆시 ◇면 ○○○길 3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 ◇ 건축규모 : 지상2층, 199.69㎡
- ◇ 위반내역 : 무허가 증축
 - 증축 면적 : 130.95㎡
 - 용도 : 주택(94.9㎡), 창고(6.51㎡), 근린생활시설(16.02㎡), 계단(13.52㎡) 등

2. 신청 사유

- ◇ 건축물 내에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1층을 임대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시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1층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으나 같은 건축물 내에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영업 신고서를 반려함.
- 임차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1층은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건축주가 무단 증축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식품영업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민원을 제기함.
 - ※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신고 수리권자는 신청 서류 확인과 「건축법」 및 「소방법」 등 다른 법령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3. 관련 법령 확인

- ◇ 「건축법」 제79조 제2항·제3항
-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4. 검토 결과 및 의견

◇ 위반건축물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내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건축물 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시정된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수리는 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영업신고를 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는 신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행위 제한 등이 있는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영업 등의 제한을 요청하면, 「식품위생법」 소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 「건축법」 제79조 제2항이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행 확보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에 대한 허가를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관청이 일정한 영업의 허용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 일정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 ※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업을 가능한 신고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이외에 영업에 대한 다른 규제 방식인 면허·인가·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이에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법령해석례 11-0027, 2011. 2. 17.).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영업신고서 유의사항 제3호’에 따르면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국토계획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례(2011. 2. 17.) 확인 : 건축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음.

질의 요지	회신 요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건축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법령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한 것임.

- 식약처 유사 질의회신 사례(2021. 9. 8.) 확인 : 「건축법」 위반 장소 영업 소재지 변경등록 불가능

질의 요지	회신 요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과 면적 등이 달라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전이라면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 영업 소재지 변경등록은 등록관청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후 시설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 가능 -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다시 심사하기 위함. -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관청이 변경등록을 위한 시설조사에서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시정된 후 변경등록이 가능함.

- ㉠도 사전 컨설팅감사 유사 사례 확인 : 대지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영업신고 제한 가능

신청 사유	검토 의견 요지
대지 내 「건축법」을 위반한 공작물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한 것임. - 행정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규정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영업 제한을 요청하면, 「식품위생법」 소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시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확인 : 영업신고서 반려 및 신고 수리 거부 가능

변호사	자문 의견(요약)
●●● 변호사 (2022. 7. 20.) - ◆◆시 자료 -	· 불법 증축 위치가 영업신고 장소와 다르다 해도 같은 건축물인 이상 행정행위비례 원칙, 건축법 위반사안 규제 취지 등에 비추어 부득이 영업신고를 일단 반려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된 후에 재차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무법인(유한) ■ ○○○ 변호사 (2022. 7. 20.) - ◆◆시 자료 -	· 일반건축물은 위반 행위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도, 그 건물 전체를 위반 건축물로 보아야 함. ·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서 「건축법」 제79조를 적용하여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임.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⑥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⑬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2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7. (생략)

③~⑪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유 의 사 항

1.~2. (생략)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생략)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도로에 접하지 않는 임야의 개간목적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1. 개요

【 산지전용 대상 임야 현황 】

- ◇ 위치 : ◆◆군 ◇◇면 ○○리 산000-0, 산000-0 등 0필지
- ◇ 소유자 : ◎◎◎(산000-0), ㉠㉠㉠ · ㉡㉡㉡(산000-0)
- ◇ 지적 : 3,508㎡(산000-0 1,548㎡, 산000-0 1,960㎡)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 전용목적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조성

2. 신청 사유

- ◇ 도로에 접하지 않은 임야를 개간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개간하고자 하는 임야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답)⁶**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자 함.
 - ※ 보전·준보전 산지에서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는 도로없이 농지를 조성할 수 있음(산림청 고시 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

3. 관련 법령 확인

-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 ◇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

6) ◆◆군 ◇◇면 ○○리 0000(답), 소유자 ㉠㉠㉠ · ㉡㉡㉡

4. 검토 결과 및 의견

◇ 도로에 접하지 않는 임야의 개간목적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준보전산지에서 개간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임도를 제외한 현황도로에 접속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고 도로에 접속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제1호 마목의 세부기준 10)에 따른 기존 현황도로에 접속 되어야 함.

※ **현황도로의 인정 범위**는 ①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를 개간하는 경우 도로없이 산지전용허가는 가능

· 따라서 개간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야가 위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군수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개간목적 임야 현황 확인 : 현황도로에 접속되지 않음

–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확인 : 산지전용하려는 임야는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하여야 함

질의 요지	회신 요약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서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제1호 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문언을 보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계획상 도로”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임.

– 산림청 질의 회신 사례 확인 : 임야를 일반 도로로 사용 시 산지전용 필요

질의 내용	회신 요지
개간허가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 부지와 도로가 직접 접하지 않고 인접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개간허가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 가능한 경우는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 현황도로가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 - 개간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가 직접 접하고 있지 않고 타인 토지(농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간허가 목적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 · 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이나 그 밖의 사업별 · 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7.>

⑦ (생략)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라. (생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9) (생략)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15) (생략)

6. 참고 자료 2(관련 고시 발채)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 따른 산지 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요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 가촌, 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한함), 헬기장, 국방·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 (생략)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현황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로로 인정 가능 여부		

1. 개요

【 도로 현황 】

- ◇ 위치 : ◆◆군 ◇◇면 ○○리 00, 000-0, 000-00, 산00, 산00 등 5필지
 - 지목 : 전(00, 000-0), 구거(000-00), 임야(산00, 산00)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 규모 : L=000m, B=0.0m~0.0m
- ◇ 형태 :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농로)
- ◇ 개설 시기 : 1983년 이전 도로 개설 후, 1998년~2000년 사이 콘크리트 포장한 것으로 추정(항공사진)

2. 신청 사유

- ◇ 축사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협의 시 건축 부지에 접한 현황 도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의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함(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3절).
 - 농업용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 되므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 임업용산지에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해당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산지관리법 제12조).
- ⇒ 현황 도로 340m 중 210m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도로 개설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3. 관련 법령 확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 ◇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3장 제3절 3-3-2-1 도로
- ◇ 「◆◆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현황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도로로 인정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건축물을 건축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함.
 - 농업용 시설물 건축의 경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해야 함.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황 도로에 접속되었어도 도로 일부가 임야로서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도로라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현황 도로 중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 가능
 - 불법 산지전용지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복구비를 예치하였다면 복구 의무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도로에 포장된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는 가능
- ※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 준공검사 전에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새로이 받으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현황 도로 항공사진 확인 : 개설시기 및 콘크리트 포장 시기 확인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1983년 항공사진 – 국토정보플랫폼 –	2002년 항공사진 – 국토정보플랫폼 –	2022년 항공사진 – 국토정보플랫폼 –

–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사례 확인 : 도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질의 요지	회신 요약
·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확인 : 임야를 일반 도로로 사용 시 산지전용 필요

판시 사항	판결 요지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요구됨. · 임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진입로로 실제 통행이 가능하여도 진입로 중 임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 진입로가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후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5.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④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 (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	· (생략)
다. 도시·군계획사업	· (생략)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생략)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15. (생략)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생략),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⑫ (생략)

⑬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생략)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12. (생략)

⑭ (생략)

6. 참고 자료 2(관련 지침 발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생략)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생략),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④ (생략)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7. 참고 자료 3(관련 조례 발체)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022.05.10 조례 제2808호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만,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한다.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공유재산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0000 행정재산 유희시설 이용계획 변경 관련		

1. 컨설팅 개요

○ 시설 개요

[000 0000]

- 위 치 : 00군 00면 000길 000-00(00리 000 일원)
- 시설규모 : 745.45㎡ [지상 2층(사무실1, 프로그램실4, 카페1 등)]
- 총사업비 : 0000백만원(내부리모델링 비용 000백만원 별도)
- 시설 사용계획

구 분		면 적(㎡)	사 용 계 획
계		745.45	
1층	온열치료실	82.40 (24.93평)	일라이트 온열 안락의자, 반신욕기
	건강관리실	31.20 (9.44평)	옴니핏 측정기, 오라 측정기, 인바디 검사
	프로그램 운영실	22.08 (6.68평)	숲해설, 산림명상 등
	관 리 실	39.68 (12.0평)	매표소, 관리 사무
	화 장 실	48.84 (14.8평)	남) 대변기3(일반2, 장애인1), 소변기3 여) 대변기5(일반4, 장애인1)
2층	북 카 페	92.46 (27.97평)	음료판매, 독서, 발마사지·족욕
	명 상 실	39.68 (12.0평)	명상, 요가
	화 장 실	48.84 (14.8평)	남) 대변기3(일반2, 장애인1), 소변기3 여) 대변기5(일반4, 장애인1)
공용 공간		327.47	로비, 계단, 복도

[000 00000]

- 위 치 : 00군 00면 000길 000(00리 000-0)
- 시설규모 : 대지면적 - 00,000㎡ [주차장, 놀이시설 등]
건물면적 - 000.00㎡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 총사업비 : 0000백만원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 컨설팅 요청 사유

☐ 당초 시설물 운영 목적

☐ 000 0000

- 0000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맞추어 효과적인 관광지 활성화
-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힐링관광 서비스 및 치유 문화공간 제공
- 00군 000 관광지의 랜드마크 브랜드화

☐ 000 00000

- 지역주민 및 군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 제공
- 창작·전시, 연구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제공

☐ 당면한 문제점

☐ 000 0000

- 직영 시 연간 운영비용(약 000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대수익(약 00백만원)
-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작은 사업규모 및 시설
- 산림치유 관광과는 거리가 먼 시설 위치(주차장 인근)
- 0000 관광개발 사업 진행 중으로 인한 치유숲길 미조성(조성중)

☐ 000 00000

- 사용연도가 15년 이상 지나 건물의 노후화
- 민간 사용·수익허가 취소 이후 민간의 시설물 활용 의사 無
- 00000000 지역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운영자 선정 시급

□ 유희시설 활용 추진 방향

➡ 적자운영을 피하면서, 당초 목적대로의 시설물 활용으로 관광지 활성화

- 시설물과 인근 공간을 활용하여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00센터 및 00000 모두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운영자 수요 조사 및 선정
- 시설물의 당초 운영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0000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운영계획을 가진 운영자 선정
- 관리위탁으로 위탁료를 지급하는 방법 대신 사용·수익허가로 대부료를 받으면서 세수 창출 도모(적자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

□ 질의 내용

1.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주 사용하면서 부수적인 운영계획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코자 하는 방향에서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료 지급없이 사용·수익허가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2. 사용·수익허가 시 수요조사 및 시설물 사용 의향 접수된 군의 생 산품을 전시·판매코자 하는 민간을 대상으로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를 적용하여 수익계약이 가능한지
3. 시설물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관광서비스 제공, 문화공간 제공 등) 하면서, 지역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 및 제3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 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3. 신청기관 의견

-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방법)에 따르면 0000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0000

운영여건상 본질의 목적대로 활성화되기까지 시기적으로 부족하고, 재정면에서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고 그 사용료를 내도록 하게 하여 위탁료 지급없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사용·수익허가”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목적이나 사용자(단체나 법인) 적격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판단 필요
- 또한, 대부료 감면 가능여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필요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공유재산 및 물품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음.
- ◇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방법)에 따르면, 0000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0000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0000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0000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수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판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주 사용하면서 부수적인 운영계획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코자 하는 방향에서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료 지급없이 사용·수익허가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판례*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00군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나,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0000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 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는 한 해당 조례에서 정한 운영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2. 사용·수익허가 시 수요조사 및 시설물 사용 의향 접수된 군의 생산품을 전시·판매코자 하는 민간을 대상으로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를 적용하여 수익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1.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재산인 000 0000는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특혜 등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해 보임.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00군 지역 특산품 또는 00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음.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000 0000 운영 관련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수익사업권 등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특별한 사용 권한을 획득하게 되므로, 일반입찰 등 공개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혜 시비에 대한 책임은 00군에 있음.
- 그러므로 00군수는 당초 조례에 정해진 운영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용허가를 통한 운영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와 같은 조례의 규정 자체와 향후 사용허가의 내용이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조례 개정 여부 및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3. 시설물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관광서비스 제공, 문화공간 제공 등)하면서, 지역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 및 제3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운영방법에 관한 해당 조례 개정 후 00군수가 위에서처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간에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은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수는 없음.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00군 000 0000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면, 이 때 00군수는 「00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여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00군 00000 공유재산 위탁료 감면 관련		

1. 컨설팅 개요

○ 민간위탁 개요

- 위수탁 시설: 00 00000(문화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 위수탁 기간: 2021. 4. 1. ~ 2026. 3. 31.(5년)
- 2020.12.18. 공유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1. ~ 2023. 3. 위탁수수료 총 000,000천원 납부

2. 컨설팅 요청 사유

- 공유재산 수탁자가 관리수탁 기간 중 코로나19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여 위탁료 감면을 요청함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기간만큼 위탁료 감면이 가능한지 컨설팅을 요청

※ 감면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공과금(전기료* 최근 3년 00,000,000원)

3. 검토 결과 및 의견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 12. 9. 행안부고시)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7호 (가)목 5)에 따르면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사항을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목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 「00 00000 공유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함) 제8조 제2항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면서도 1. 재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2. 운영비용 원가계산서 상 산출된 변동비 총액(00,000,000 원)의 초과분의 경우에는 곡성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또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수탁기관은 영업이익 감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탁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같은 사유로 00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5조 제6항에는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와 00군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협약은 소멸된 것으로 정하고 있음.
- ◇ 살펴보면, 위수탁 협약서에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탁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탁료 감면은 할 수 없음.
- ◇ 다만, 공유재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탁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이 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까지 운영비용의 손실 보전 규정이 없는 것은 일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00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7호 (나)목 4)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 이를 위해 관리위탁의 목적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기여도, 위수탁 협약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설치 여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수탁자의 노력 정도 등에 대한 평가, 남아있는 관리위탁

기간 동안 해당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시
건명	00시 명의로 착오 등기된 토지 무상양여 가능 여부		

1. 개요

【 토지 현황 】

- ◇ 소 유 자 : 00시(50%), 00000공사(50%)
- ◇ 위 치 : 00시 00면 00리 00-0 외 4필지

지번	00-0	00	00-0	00-00	00-0	비고
지적	1㎡	215㎡	84㎡	2,132㎡	16㎡	5필지, 2,448㎡
지목	도로	도로	도로	전	도로	

- ◇ 취득사유 : 00 00지구 00구역 조성사업⁷⁾ 토지 수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 수용재결 : 2019. 11. 18.(2019. 12. 27. 공탁금 지급 후 2020. 1. 2. 등기절차 진행)

2. 신청 사유

- ◇ 00시·00000공사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시행하는 00지구 00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00000공사에 무상양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00지구 00구역 조성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공사비+설계비+보상비 등)는 00000공사가 100% 부담하여 추진함.

※ 00시는 인·허가, 보상업무 협조, 민원 대응 등 행정 업무 지원(협약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3차례 토지 수용하였고, 1차 및 3차 수용 재결로 취득한 토지는 00000공사 단독 명의로 2차 수용 재결로 취득한 토지는 공동명의로 됨.

※ 00시 및 00000공사는 토지 소유권 공동명의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 00000공사에서는 00시와 공동명의로인 택지는 일반 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착오로 공동명의 등기된 토지에 대해 00시에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음.

- 갑설(무상양여 가능)과 을설(매각 절차 이행)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갑설	을설
· 00시가 착오로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상양여 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함이 타당	· 착오로 소유하게 된 재산도 공유재산이므로 매각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함이 타당

7) 시행자 : 00시/00000공사, 사업 기간 : 2012년~2022년, 사업 규모 : 104천㎡(주택 98세대, 계획인구 245명), 사업비 : 287억원(00000공사 100%)

3. 신청기관 의견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전액 공탁금을 지급한 00000공사 소유 토지가 명백하고, 단순 착오에 따라 00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판단되며, 실제 소유자인 00000공사에 무상양여로 소유권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련 법령 확인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8조·제40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2조
- ◇ 「00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 결과 및 의견

◇ 00시 명의로 착오 등기된 토지 무상양여 가능 여부 : 불가능

- 공유재산의 양여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가 있어,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사할 때 국민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다만, 00시가 착오 등으로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그 토지를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할 것이며,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신청 등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방법은 00시장이 결정하시기 바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00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건 당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0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따르지 않고 00000공사의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는 00시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관리·처분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법령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공동시행 기본협약 확인 : 토지 매입 등 사업비 00000공사 100% 부담

구분	00시 수행 역할	00000공사 수행 역할
제3조 업무 부담	·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 · 보상업무 협조 · 언론 및 민원에 대한 주도적 대응 · 확장사업 후보지에 대한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조치방안 수립·시행	· 사업에 따른 사업비 투자 · 친수구역 지정에 위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 사업 수행 중 보상·공사·분양 등 제반 업무 총괄 수행 ·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 수행
제5조 사업비 부담	·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기금 등의 확보·지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시책 등에 의한 입주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00000공사에서 부담한다.

– 변호사 자문 의견 확인 : 00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타당

변호사	자문 의견(요약)
법무법인 0000 변호사 000 (2023. 4. 5.) - 00000공사 자료 -	·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00000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보상·공사·분양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00시는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 및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00시와 00000공사는 편입토지 취득에 필요한 모든 보상금을 00000공사가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도 00000공사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1차 및 3차 수용 재결로 취득한 토지 소유권은 00000공사로 되어 있으나, 2차 수용 재결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은 00시와 00000공사가 공유자로 되어 있음. · 00000공사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과 다르게 5필지에 대해서만 공동소유로 등기가 된 것은 위와 같은 합의에 맞지 않게 잘못 등기된 것이므로 00시의 공유지분은 00000공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6.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친수구역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5. (생략)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 9. (생략)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 ③ (생략)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 ⑤ (생략)

-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⑦ ~ ⑧ (생략)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00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918호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00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6.>

1.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시
건명	행정재산(도로, 국유지) 중 개인 점유지 용도폐지 가능 여부		

1. 개요

【 행정재산 현황 】

- ◇ 위 치 : ◆◆시 ◆◆면 ●●리 000-00번지
- ◇ 소 유 자 : 00000(관리기관 ◆◆시)
- ◇ 사용용도 : 도로(마을안길)
- ◇ 지 적 : 000㎡(용도폐지 요청 면적 : 00㎡)
- ◇ 용도폐지 사유 : 개인 주택 담장 및 마당으로 점유 사용 중

2. 신청 사유

- ◇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안길(국유지) 중 일부를 2005년부터(추정)⁸⁾ 주택 담장과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민원인 소유 ◆◆면 ●●리 000번지 000㎡ 중 00㎡와 000번지 000㎡ 중 0㎡가 국유지와 연결되어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으므로 본인이 점유중인 국유지 00㎡의 용도폐지를 요청
 - ◆◆시는 국유지(도로)가 현재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택 담장 및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일부 면적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하여도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용도폐지는 가능하다고 판단
 - 행정재산(도로) 현황

위성 사진	측량 성과도(일부 발췌)
“그림 생략”	“그림 생략”

8) 행정재산 연결필지 1981. 4. 16. 취득, 2005. 7. 29. 주택 건축물 신축(1934년 8월 신축한 건축물 철거 후 신축)

3. 관련 법령 확인

- ◇ 「국유재산법」 제40조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제24조
-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행정재산(도로) 중 개인 점유지 용도폐지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가능하고, 용도폐지 여부는 ◆◆시장이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⁹⁾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 용도폐지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도(시·군에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각 호¹⁰⁾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르면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용도폐지 검토 대상 마을안길을 이용하여 장래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면 ●●리 000번지(대), 000-0번지(임야), 000번지(대)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9) 한국자산관리공사

10) ①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②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③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④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⑤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2019. 5. 24.) 확인 : 용도폐지는 시장·군수가 결정

질의 요지	회신 요지
·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시·도(시·군에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대체도로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는 어려움.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2005. 5. 21.) 확인 : 관계인 동의서 징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질의 요지	회신 요지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계인 동의서 징구가 적법한지 여부	· 도로 등의 용도폐지 시에 민원이 현저히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발생 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판단에 의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2호, 2022. 9. 27., 타법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거. (생략)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5. 참고 자료 2(관련 규정·지침 발체)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2017. 1. 2.] [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2017. 1. 2., 일부개정.]

제23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에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이해관계인 협의) ①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12. 31.] [기획재정부훈령 제586호, 2021. 12. 16., 제정.]

제9조(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기대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군 용도 지정 매각 일반재산 경매 낙찰자 특약등기 승계 가능 여부		

1. 개요

【○○군 용도 지정 매각 일반재산 현황】

- ◇ 재 산 명 : 舊 ●●분교(2008. 00. 00. ○●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입)
- ◇ 위 치 : ○●군 ○●면 ○●리 28-1 · 28-3 · 28-4 · 28-7
- ◇ 매매재산 : 토지(4필지, 9,782㎡), 수목(소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등)
- ◇ 매 수 자 : (주)○○○(대표이사 ○○○○안)
- ◇ 계약 일자 · 금액 : 2015. 6. 10. 000,000,000원
 - 용도 지정(○○○ 종묘 생산 등),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목적 외 사용·再 매각·再 임대 금지’
- ◇ 경매 개시일 : 2021. 0. 0. ※ 경매 유찰 : 1차(2021. 0. 0.) ~ 6차(2022. 0. 00.)

2. 신청 사유

- ◇ ○●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매각,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특약등기를 함.
- ◇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매계약 해지¹¹⁾ 또는 해제¹²⁾ 가능(공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공유재산법 제38조 제2항).
- ◇ 매수자 경영 악화, 경매 개시(계약 조건 위반), 경매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특약등기 이행 조건으로 낙찰되면 법적 다툼이 없도록 ○●군의 협조를 요청함.
- ◇ 「공유재산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소유권을 회복)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再 매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해 경매 개시에 이르게 된 매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상황임.
- ◇ 경매 진행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경매 후 낙찰자에게 특약등기(10년 동안 지정된 용도로 사용) 승계가 가능한지에 관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11) 계속적 계약 관계나 채권 관계에서 사정이 변경되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12)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소급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3. 관련 법령 확인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38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군 용도 지정 매각 일반재산 경매 낙찰자 특약등기 승계 가능 여부 : 불가능
 - 공공목적으로 용도와 기간을 지정하여 매각(●●●● 종묘 생산 등, 10년)했으나, 매수자 경영 악화로 경매 개시(용도나 기간 위반), ●●군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특약등기).
 - 공유재산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군은 소유권을 회복해야 함.
 - 舊 ●●분교 매매계약서 확인 : 용도 지정(10년), 위반하면 계약 해제(특약등기) 등

계약자	· ●●군수(매각), (주)●●●(대표이사 ○○○○)
용도 지정	· ◇◇◇◇ 배양, ●●●● 종묘 생산 및 ■■■■■■ 등과 관련 ○○○○○○, □□ □□□□ 등의 연구·생산센터 및 관련 파일럿 플랜트 구축과 부대시설 부지
기간 지정	· 계약일(2015. 0. 00.)부터 10년
계약서 주요 조문	· 제2조 :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3조 : 10년 동안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본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 제5조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매수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 “을”이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갑”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질의 회신(2021. 6. 2.) : 계약 해제하고 소유권 확보해야 함.

질의 내용(요약)	회신 내용(요약)
· 특약등기권자인 ●●군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경락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 매수자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약등기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함. ·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약등기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경락받은 후 경락인이 특약등기 잔여기간 지정 용도대로 사용한다면 기간 종료 후 특약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유사 사례 질의 회신(2020. 10. 27.) : 계약 해제하고 소유권 확보해야 함.

질의 내용(요약)	회신 내용(요약)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특약등기가 승계되는지 여부	「공유재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나, 이는 민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가림막 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률 전문가(2명) 자문 의견 확인 : 계약 해제 가능, 특약등기 승계에 관해 의견 상이

변호사(2명)	자문 의견(요약)
◆◆ 법률사무소 대표 ●●● 변호사 (2021. 0. 00.) - ○○군 자료-	-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면 목적 외 사용 금지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이는 계약 해제사유가 됨. - 경락인에게 해제 특약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군과 ㈜○○○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으로 경락인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인수하도록 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再 매각·再 임대의 금지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 경락인을 상대로 해제 특약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거나 ㈜○○○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변호사	㈜○○○가 사용기간 10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재산이 제3자에게 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특약등기로 제3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특약등기를 근거로 해제권 행사 여부는 ○○군에서 매각 재산의 중요도, 계약의 목적, 해제권 행사 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 경락인에게 사용기간 준수 등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참고 자료-1(관련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본조신설 2010. 8. 4.]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4. 7. 7.>]

5. 참고 자료-2(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발체)

공유재산(舊 ●●분교) 매매계약서

(계약 체결일 : 2015. 0. 00.)

제2조 “갑(●●군수)”은 위 재산을 “◇◇◇◇ 배양, ㉠㉠ 종묘 생산 및 ■■-■■-■■ 등과 관련 ㉠㉠ ㉠㉠, ㉠㉠ ㉠㉠㉠ 등의 연구·생산센터 및 관련 파일럿 플랜트 구축과 부대시설 부지”용으로 매각하며, “을{(주)●●●}”은 이를 수락하고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동안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목적 외 사용, 재 매각, 재 임대 금지)

제5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를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한 때
6. 제3조 및 5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조직·인사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0000000000원
건명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대상 관련		

1. 컨설팅 개요

○ 사건 개요

- 신입직원(00.0.입사) 중 개인 취미 일환으로 미술 작품 활동하며 입사 전 아트 페어에 작품을 출품함
- 아트 페어 측에서 참가명목으로 연말 수당 지급 예정 (*금액 확인불가)
- 아트 페어 전시 중 출품 작품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함

2. 컨설팅 요청 사유

○ ‘사례금을 받는 전시 행위’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여부

-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각종 연주회·전시회 등에서 연주·공연·전시 등 행위’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기재되어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아님
- ‘사례금이 발생하는 전시행위’도 이에 해당해 외부강의 등 신고가 불필요한지 해석이 모호함

○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미술 전시 활동 행위의 영리 업무 행위 여부 및 겸직허가 대상여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진흥원 복무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및 「진흥원 복무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개인 취미 일환으로 미술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해 작품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함
- 해당 활동은 영리업무 보다는 개인취미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작품 판매 금액의 상한액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의 금액대로 거래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기에 판매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겸직허가 통한 해당 활동을 허가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모호함

○ 신청사유

- 미술작품 활동 외에도 유튜브 등 직원의 개인적 수익 창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행정 차원에서 처리사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나, 기관 개원 이래 해당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가 모호함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게 됨

3. 신청기관 의견 등

- '사례금이 발생하는 전시행위'더라도 입사 전 출품해 연말에 사례금을 수령하고, 전시행위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직무상 능률 저해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이더라도 재산상의 이득 목적 보다는 개인 취미활동에 가까우므로 **'영리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작품 활동이 계속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0000000000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000000000000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35조에 따르면,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 위 「복무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이 **제3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우선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취미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지 않았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전시회는 외부강의 등이 아니므로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직원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회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고 단지 **취미활동의 결과물을 출품하고 참가에 따른 수당 또는 실비변상적 수당만 받는다면,**

- 1회성 참가 및 작품의 판매가능성만으로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아 「복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규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물론 겸직허가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향후 개인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주기적 또는 계속적인 전시회 참여 등 준작가로서의 활동이 명백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상의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재)00◆◆◆◆◆◆◆◆◆◆
건명	(재)00◆◆◆◆◆◆◆◆◆◆ ○○○ 신규채용 서류 심사 평가표 변경 가능 여부		

1. 개요

【○○○ 채용 개요】

- ◇ 채용분야(인원) : ○○○○○○○○○○○(0명)
- ◇ 기본자격
 - ○○ 관련 분야 전공자로 12년 이상 경력자
 - 정부·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상당직 포함) 이상으로 ○○○○·□□□□□□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관련 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 채용형태 : 전임계약직 가급(2년 계약) ※ 1년 단위 2차례 연임 가능
- ◇ 합격자 결정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면접 심사 후 평가점수 합산하여 결정

2. 신청 사유

- ◇ ○○○○○○○○○○○의 임기 만료(0000. 00. 0.)에 따라 ○○○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합격자가 없어 채용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서류 심사표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 절차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최종 합격자의 사퇴와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¹³⁾ 5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초 공고한 서류 심사표로 평가할 경우, 전문학사나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은 채용 적격자로 판단되어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되고 있어 서류 심사표를 변경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서류 심사표 변경이 가능하다면 ○○○후보추천위원회와 (재)00◆◆◆◆◆◆◆◆◆◆ 채용 담당부서 중 어느 곳에서 변경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음.

3. 관련 정관·규정 확인

- ◇ 「(재)00◆◆◆◆◆◆◆◆ 정관」 제14조
- ◇ 「(재)00◆◆◆◆◆◆◆◆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 규정」 제42조·제43조·제46조
- ◇ 「(재)00◆◆◆◆◆◆◆◆ 인사 규정」 제7조의3·제10조·별표 1

13) 최초 2021. 7. 29., 2차 2021. 10. 1., 3차 2021. 10. 28., 4차 2022. 1. 10., 5차 2022. 2. 9., 6차 2022. 4. 13.

4. 검토 결과 및 의견

◇ (재)00◆◆◆◆◆◆◆◆◆◆ 000 신규채용 서류 심사표 변경 가능 여부 : 가능

- 000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표는 (재)00◆◆◆◆◆◆◆◆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심사표 변경 여부는 000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 000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000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000 응모자격·직무수행 요건·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시험방법·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작성 전라남도 (재)◆◆◆◆◆◆◆◆◆◆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00◆◆◆◆◆◆◆◆◆◆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 규정 제46조 }.

※ 다만, 000 채용 자격요건은 「(재)00◆◆◆◆◆◆◆◆◆◆ 인사규정」 제10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자격요건의 범위에서 서류 심사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참고사항 : 정관과 규정이 맞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재단법인 00◆◆◆◆◆◆◆◆ 정관		(재)00◆◆◆◆◆◆◆◆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 규정	
개정 필요성	· 정관 제43조는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000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로 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으므로 규정을 개정하여 000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관련 조항	· 제43조	관련 조항	· 제42조 제1항
조문 내용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000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정관 제43조에 따라 000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5. 참고 자료 (관련 정관·규정 발췌)

재단법인 00◆◆◆◆◆◆◆◆ 정관

[개정 2020.12.17.]

제14조(임직원) ① 재단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000으로 한다.

② 000 및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000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000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④ (생략)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재단법인 00◆◆◆◆◆◆◆◆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 규정

[개정 2020.6.24.][개정 2020.9.14.][개정 2020.11.30.]

제42조(설치 및 기능) ① 000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정관 제43조에 따라 000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000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000이 임용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43조(구성) ① 원장은 000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000후보추천위원회를 000 임기가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2. 해당 00 소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명
3. 전라남도 소관 부서 과장

②~④ (생략)

제46조(●●●후보 모집방법) ① ●●●후보자는 ●●●이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② ●●●후보 모집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과 재단의 누리집에 공고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재단법인 00◆◆◆◆◆◆◆◆ 인사 규정

[개정 2020.3.10.][개정 2020.9.14.]

제7조의3(●●●의 채용과 임기 등) ① 직원은 별표 1에 따른 채용 자격요건과 공고문의 채용 자격을 갖춘 경우 ●●● 직위 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원장은 ●●●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세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⑤~⑥ (생략)

제10조(자격요건) ①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자격요건은 별표 1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별표 1의 채용자격 일부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④ (생략)

[별표 1] 직급별 채용 자격요건

구 분	채용 자격요건
센터장 (가급)	· ㉠ 관련 분야 전공자로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공무원(상당직포함)이상으로 ㉡ 또는 ㉢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재단법인 ○○○○○○○○
건명	「청탁금지법」과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 중 우선 적용 대상		

1. 개요

【 재단법인 ○○○○○○○○ 현황 】

- ◇ 명 칭 : 재단법인 ○○○○○○○○(원장 ○○○)
- ◇ 위 치 : ○○○시 ○○○면 ○○○○로 00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 설 립 일 : 0000년 00월
- ◇ 조직구성 : 이사장(전라남도지사), 원장, 0단 0실 00팀 000명(직제 규정)
- ◇ 주요기능 : 정책 수립, 산학연관 연계, 기업성장 지원, 산업생산 지원,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

2. 신청 사유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에는 대가를 받는 모든 대외활동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공직자 등¹⁴⁾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신고 제외 대상 규정 있음)
 -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약칭 : 대외활동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 대가를 받는 대외활동은 반드시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외부용역 수탁·수행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함.
(신고 제외 대상 규정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대외활동인 경우 (재)○○○○○○○○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대외활동 신고를 받지 않고 있음.

14)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공직유관단체(기관)의 장과 임직원·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연론사 대표 및 임직원

3. 관련 법령 확인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
-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 ◇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 제2조·제5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청탁금지법」과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
우선 적용 대상 : (재)○○○○○○○○ 대외활동 운영 규정

- (재)○○○○○○○○ 직원의 대외활동은 「청탁금지법」보다 「재단법인 ○○○○○○○○ ○○ 대외활동 운영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임.
- 신고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직원 복무관리 필요.
- 사안별로 법령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규정에서 신고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가를 받는 모든 대외활동은 신고하는게 바람직.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과 「대외활동 운영 규정」의 ‘대외활동’ 비교 :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청탁금지법」	「대외활동 운영 규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외부강의’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함. -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 등으로 규정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	· 대가를 받는 모든 ‘대외활동’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 · ‘대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함. ① 겸임교원 활동 : 산·학·연 협력의 일환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원으로 임명받아 강의, 논문지도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② 출강 : 대학, 대학원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임명없이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활동 ③ 협회·단체 참여 : 협회·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 개별적 참여나 관련 학회업무에 참여하는 활동 ④ 자문 및 심의 참여 활동 :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자문이나 심의에 참여하는 활동 ⑤ 외부용역 수탁·수행 :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 외부의 용역 등을 개인이 위탁 받아 연구·수행 하는 활동 ⑥ 그 밖의 회의 참여 등 :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등에서 강의·강연 또는 발표·토론 등에 참여하는 활동

－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신고 조문 제정 목적 확인(제10조 제2항)

법 조문	제정 목적(요약)
·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의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 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신고 제외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 불필요.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청탁금지법」 제2조) : 적용 대상 기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제1호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나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2호 :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나목 :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호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재출자·재출연 포함)

5. 참고 자료-1(관련 법령 발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9호, 2021. 4. 1., 일부개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5. 참고 자료-2(관련 규정 발췌)

재단법인 ○○○○○○○○ 대외활동 운영 규정 (약칭: 대외활동 운영 규정)

2013. 10. 23. 제정 2014. 5.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9. 17. 개정 2021. 3. 25. 개정

제2조(정의) ① “겸직”이라 함은 임직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겸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외활동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② “대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1. 겸임교원활동 : 산·학·연 협력의 일환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원으로 임명받아 강의, 논문지도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2. 출강 : 대학, 대학원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임명없이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활동
3. 협회·단체 참여 : 협회·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학회업무에 참여하는 활동
4. 자문 및 심의 참여활동 :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자문이나 심의에 참여하는 활동
5. 외부용역 수탁·수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의 용역 등을 개인이 위탁 받아 연구·수행 하는 활동
6. 그 밖의 회의 참여 등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강연 또는 발표·토론 등에 참여하는 활동

제5조(신고의무) ① 겸직 등 대외활동에 대한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전결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② 대가를 받는 대외활동은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외활동이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21. 3. 25>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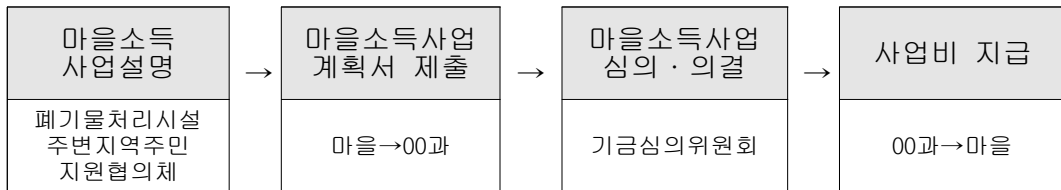
예산·회계·재정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소득사업비 관리 관련		

1. 컨설팅 개요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회 개최(0000. 00. 00.)

- 00면 000리 마을소득증대사업(마을공동창고 및 작업장) 250백만원 지급
심의 의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0000. 00. 00)

○ 00면 000리 마을공동창고 및 작업장 준공(0000. 00. 00.)

- 주건축물 제1동 : 00군 00면 00리 000-0(창고시설 250㎡)
- 주건축물 제2동 : 00군 00면 00리 000-0(창고시설 151.2㎡)
- 건축물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자 : 00리 0000회
 - 대표자 : 마을이장 000 / 00군 00면

※ 00면 00리 000-0 토지의 소유권은 (주)00000에 있으며, 000마을주민 및 청년회에 사용 승낙함(사용기간 0000.00.00.~0000.00.00.)

2. 컨설팅 요청 사유

- 00면 000리는 (주)00000로부터 0000.00.00. ~ 0000.00.00.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마을공동창고를 건축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주)00000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주)00000와 00면 000리 주민대표와의 합의서에 의해 원상복구해야 하며, (주)00000는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 00면 000리 마을주민들은 (주)00000 사업종료에 따른 소득사업(마을공동창고)을 유지할 수 없기에 마을공동창고 건축물을 매각하고자 함.

- 기금 소득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 매각대금에 대한 환수

<00군 의견>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한 기금으로 부득이하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보조금(매각대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 매각금액 > 지원금액 : 지원금액 환수

· 매각금액 < 지원금액 : 매각금액 환수

- 향후, 별도의 소득사업계획 신청 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00주민 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마을소득사업으로 지급되었으니, 환수조치 없이 마을주민의 합의하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폐기물시설축진법」에는 지원금에 대한 유지기간, 환수 방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컨설팅감사 요청

3. 신청기관 의견 등

-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한 마을공동창고 설치 사업으로, 토지 소유주인 (주)00000의 사업종료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마을공동창고 건축물을 매각해야 할 상황으로

- 마을주민들은 보조금(매각대금)에 대해 환수조치 없이 마을주민의

합의하에 재사용 하고자 하나,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계좌를 설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하여야 하며 마을주민들의 기금관리 사후정산 문제 등의 이유로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임.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 「00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00군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00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 계획안,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

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하고 있음.

- ◇ 살펴보면, 해당 마을에서는 00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마을 소득사업 계획서를 00군에 제출하였고, 00군은 주민지원기금심의회 심의 후 2000. 00. 00. 마을 소득증대사업(마을 공동창고 및 작업장) 추진을 위해 기금 0억0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해당 마을에 지급하였으며, 0000. 0. 00. 마을공동창고 및 작업장을 준공하여 이용해오던 중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건물의 매각·철거 등 처분과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을 두고 00군과 해당 마을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폐기물시설축진법」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유지기간 내지 사후관리기간,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 방법 등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성격상 보상 차원의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한 경우로 재산처분 제한,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중단·폐지, 사후관리기관 등이 적용되는 일반 보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보임.
- ◇ 다만 당초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목적이 「00군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7조 제1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별표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관련 건물이 위치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에 따라 건물을 처분하게 되는 상황 등 불가피하게 당초 지원목적이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현 위치에서 소득증대사업 계속 추진 또는 건물매각 후 유사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 당초 지

원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그러므로 00군에서는 본 건을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상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00군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00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증대사업지속을 위한 건물의 활용·처분 방안과 향후 지원 방법 등을 최초 주민지원기금 지급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00군은 「폐기물처리시설축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일관성 있는 처분을 위해 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지원사업의 중단·폐지 시 지원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가칭)00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소득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 보조금 교부 현황

- 보조금 교부 목적 : 000000000(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교부대상 : 00군 00면 00리 외 27개마을
-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000	2,252	358	500	1,052	810	617	600	600	521	690

- 공동토지매입 : 117필지(3,790백만원) - 임가공공장 건립 : 1식(1,250백만원)
- 마을방범 CCTV설치 : 1식 (99백만원) - 기타 용수로정비 등 :1식(450백만원)
- 축사시설 : 1식 (2,111백만원) - 임가공시설 : 1식 (300백만원)

○ 00군 「000000000 현대화 사업」

- 사 업 명 : 000000000 현대화 사업
- 사 업 량 : 소각시설 60톤/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8.9톤/일
음식물자원화 시설 15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 사 업 비 : 총 00,000백만원(국00%, 군00%, 민투 00%)
- 사업기간 : 사업 착수후 5년(예상)

※ 현재 입지선정 결정 중에 있으며 설치부지는 現 000000000 부지이며, 신규 소각장(60톤/일) 가동 후 기존 소각장(30톤/일)은 철거계획 중임.

2. 컨설팅 요청 사유

○ 신청요지

- 2009년 10월 00군은 000000000(소각시설 30TON/일)를 가동 개시하면서 피해를 받는 00면의 000마을 외 27개 마을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000000000 주변마을 지원사업』(공동 토지매입,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함.
 - 00군은 현재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현대화사업 옆 부지에 신규시설(60ton/일)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 시점인 2028년에 기존 소각시설을 용도폐지 계획 중에 있음.
 - 『000000000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소각시설의 용도폐지로 보조금 교부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00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사정의 변경을 근거로 보조사업의 교부 내용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 ※ 보조금 교부 내용 변경 요청 사항 : (당초) 토지 양도 등을 할 수 없음 ⇒ (변경) 소각시설 용도 폐지시 양도 또는 교환 대여 가능.
- 00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는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음.
 - 같은 조례 1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컨설팅 요청 내용

- 00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을 원인으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승인을 요청한다면 지자체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 결과 및 의견

- ◇ 「00군 보조금 관리 조례」(1997. 12. 29.)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 같은 조례 제12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1.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 제1호에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면 위 각 호의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본 건의 보조사업자는 소각시설의 용도폐지로 보조금 교부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00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사정의 변경을 근거로 보조사업의 교부 내용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00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피해 보전 차원에서 「00000000 주변마을 지원사업」(공동토지 매입 등)을 추진한바, 기존 소각시설이 폐지될 예정이라 하여 해당사업의 보조금 교부목적(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이 상실(사정의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 ◇ 그러므로 당초 보조사업인 「00000000 주변마을 지원사업」(공동 토지 매입, 마을회관 정비 등)이 완료된 경우, 「00군 보조금 관리 조례」(1997. 12. 29.) 제10조 단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00군수의 승인없이 해당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토지 등)에 대한 처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		

1. 개요

【 보조사업 현황 】

- ◇ 사업명 : 0000년 000 유통·가공·보관시설 지원사업
- ◇ 위치 : 00군 00면 00리 00
- ◇ 사업자 : 000000000
- ◇ 사업비 : 5억원(군비 4, 자부담 1)
- ◇ 시설규모 : 창고 1동 660㎡ ※ 사후관리 기간 : 2029. 5. 30.
- ◇ 사업목적 : 00 00 전용 보관창고 신축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편의 기여

2. 신청 사유

- ◇ 0000년 000 유통·가공·보관시설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창고를 00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0000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농업용 창고가 보조사업 목적의 000 유통·가공·보관시설로 활용도가 떨어져 000000 보관창고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지정받지 못함.
- 0000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창고를 처분하고, 000000 보관창고 입지가 가능한 00면 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000000 관련 시설은 0000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000000을 가공·보관하는 시설임.
- 00군에서는 0000 소유의 창고를 매입하여 00면 일원의 주민들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
-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2023년 2월 00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창고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76,225천원이 산출되어 보조사업비 500,000천원 대비 76,225천원의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확인됨.

3. 관련 법령 확인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
: **처분 가능, 보조금 회수 필요**

－ 보조사업자가 00군수로부터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받으면 양도 가능,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행위를 승인**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조사업자의 **처분 승인 요청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처분 승인 요청 기간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승인 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보조금 회수 금액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별표 5의 나. 보조금 환수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중요재산 사후관리 대상 확인** :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 사후관리 대상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준공일	사후관리 기간 경과 예정일	비고
건축물 (농산물 유통·가공·보관시설)	준공일부터 10년	2019. 5. 30.	2029. 5. 30. (잔여 기간 : 81개월)	

– **법제처 보조금법 해석 사례 확인**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후 처분 가능

질의 요지	해석 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에서 양도·대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법」 제35조 입법 취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의(恣意)로 양도·교환·대여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재산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3.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달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생략)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06.09 조례 제2777호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 지원 가능 여부		

1. 개요

【 국비보조사업 개요 】

- ◇ 위치 : ○○군 ㉠㉠리 000-0번지 외 0필지
- ◇ 보조사업자 : ◇◇◇◇◇◇◇◇◇◇(대표 ◆◆◆)
- ◇ 규모 : 공장동 0,000㎡, 창고·사무동 0,000㎡
- ◇ 사업기간 : 0000. 0. 0. ~ 0000. 00. 00.
- ◇ 사업비 : 00억원(국비 00, 군비 00, 자부담 0)
- ◇ 사업목적 :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생산비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

2. 신청 사유

- ◇ ●● 양식장에 공급하기 위한 배합사료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 내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보조사업자는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기술제안 공모사항에 주요 공정별 필수적인 설비가 반영 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국비보조사업과는 별개로 「0000년 ○●○ ○●○○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국비보조사업(○●○ ○●○○ 공장건립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된 기계설비 구축을 보조사업 내용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계설비 구축을 도비보조사업(○●○ ○●○○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도비보조사업 시행 지침에는 보조사업자 모집, 보조금 교부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확인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5조·제35조의2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도비보조사업 지원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축하는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기능·형식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도비보조사업 지원 가능.

- 다만, 국비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조금 교부권자(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후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중복 지원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도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중요재산 현황 작성 시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부기등기하고, 현황을 작성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보조금 교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④ (생략)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④ (생략)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시
건명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및 지원 한도 전라남도 자치법규 준용 가능 여부		

1. 개요

【 투자기업 현황 】

- ◇ 회사명 : ㈜◆◆◆◆(대표 ○○○)
- ◇ 위치 : ◆◆시 ◆◆읍 ㉠㉠리 000-0, 000-0(◆◆ ㉠㉠일반산업단지¹⁵⁾)
 - 부지 매입일 : 0000. 0. 0.
- ◇ 부지면적/건축면적 : 0,000.0㎡ / 0,000.0㎡
- ◇ 업종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투자규모 : 투자액 00억원, 고용창출 00명

2. 신청 사유

- ◇ ◆◆시는 ㉠㉠일반산업단지 내 환지¹⁶⁾ 대상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산 성립 전에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와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 ◆◆시는 분양률 80% 미만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공고 기준에 따라 체비지¹⁷⁾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도비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음.
-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내 환지 대상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도비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한정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분양가의 00% 또는 0억원까지로 정하고, 관련 예산을 0000년 본예산에 편성했음.
- ※ ㈜◆◆◆◆은 0000. 0. 0. ㉠㉠일반산업단지 내 환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0000. 00. 00. 전라남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음.
- ※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9조).

15) 개발방법 : 민간개발(조합)방식, 사업기간 : 2008년 7월~2016년 10월, 산업용지 : 24필지 135,873.7㎡, 산업용지 분양가격 : 평당 80만원,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전기장비·1차 금속·화학물 및 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16)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종전 토지의 위치·지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

17)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일반 매각할 수 있는 땅

3. 관련 법령 확인

- ◇ 「지방자치법」 제28조·제29조·제37조·제47조·제114조·제116조
-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9조·제19조
-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9조
-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및 지원 한도 전라남도 자치법규 준용 가능 여부 : 일부 가능

① ㉠㉠일반산업단지 환지 대상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시비) 지원은 가능

-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내 환지 대상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도비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한정해서 시비 100%를 재원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음{0000년 ◆◆시 기업유치보조금 예산 편성(안)}.

※ ◆◆시는 분양률 80% 미만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공고 기준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도비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음.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토지 매입일부터 2년 이내에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주)◇◇◇은 0000. 0. 0.까지 입지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②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준용은 불가능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전라남도 조례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전라남도 조례 등의 준용은 불가능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지방자치법 제28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대등한 관계의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함(지방자치법 제114조·제116조).

-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 확인 : ㉠㉠일반산업단지 환지 대상 부지 입주기업에 한정해 지원

구분	◆◆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근거 자료	· 0000년 ◆◆시 기업유치 보조금 예산 편성(안) 결재 문서 (최종 결재자 ◆◆시장 ㉡㉡, 결재일 0000. 0. 00.)
지원 목적	· 미분양 산단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일반산업단지 환지 입주기업(도비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정
지원 내용(한도)	· 입지보조금(분양가 00% 이내, 최대 0억원 한도)
예산액	· 000,000,000원(시비 100%)

- ◆◆시 조례 및 시행규칙 확인 :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가능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②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고사항(입지보조금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분양가의 00% 이내, 최대 0억원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비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인 익산일반산업단지 환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 한도는 분양가의 30% 이내, 최대 4억원으로 되어 있음. ▶ ◆◆시의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지원과는 별개로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는 분양가의 00% 이내, 최대 0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6. 참고 자료 2(관련 자치법규 발췌)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 11. 11.] [전라남도◆◆시조례 제1769호, 2020. 11. 11., 일부개정]

제9조(입지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전라남도◆◆시규칙 제882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④ (생략)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0명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21. 11. 19.>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11-11 규칙 제 3267호

제8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4.)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2018.10.4.)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과
건명	000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방법		

1. 개요

【 000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현황 】

- ◇ 사업 목적 :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
- ◇ 사업 기간 : 1년(0000년 1월 ~ 12월)
- ◇ 지원 대상 : 전남 소재 000개교 000,000명
- ◇ 사업 예산 : 00,000백만원(도비 00,000, 시군비 00,000, 교육청 00) ※ 식품비 기준

2. 신청 사유

- ◇ 000도는 000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000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액보다 적게 교부 결정했고(교육청 자부담금 00백만원 제외), 사업 추진 후에 0억0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정산에 교육청 자부담금(00백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부담금(00백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급식 대상 학교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000도와 22개 시·군이 교육청을 통해 식품비 100%(도 50%, 시·군 50%)를 보조하는 사업임.(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제4조·제5조)
 - ※ 000도는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를 학생 수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0000년 10월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 사업비를 결정했음(공문서로 협의하지 않고 유선 전화와 담당자 간 휴대전화 문자로 협의).
 - ※ 매년 집행 잔액이 0억원~0억원 발생함에 따라, 000도는 교부 결정에 교육청 자부담금(00백만원) 제외
 - ※ 교육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000도와 22개 시·군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소요액 중 부담률에 따른 도비 보조금 00백만원이 부족하게 교부 결정되자 학교별 보조금 세부내역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00백만원을 자부담해 예산을 편성하고 각급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했음.

3. 관련 법령 확인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제4조·제5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000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방법 :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재원별 정산
 -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전라남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산보고서에도 자부담금을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식품비에 대한 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도 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매년 0억원~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사업비 00백만원을 감액 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했음.
 -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지방보조금법 제17조).
 -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000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내역 확인 : 자부담금 없음

구분	재원별 보조사업비(천원)					
	총계	식품비				경비 ¹⁸⁾
		소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교육청
보조금 교부 신청 (전라남도교육청)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00,000,000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전라남도)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00,000,000

* 시군비 :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시·군에 별도 교부 신청

-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유사 질의 회신(2022. 6. 9.) 확인 :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정산보고서에 자부담 제외

질의 요지	지적 사항
· 보조금 외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보조사업 정산 시 자부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보조사업의 수행에 보조금과 자부담이 지출되었다면,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됨. ·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보조금으로만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작성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조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는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가와 전라남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과정 중 규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 ◆◆◆◆과에서 신청한 내용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인 규제와 관련된 적극행정 내용이 없고, 지방보조금법 검토와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유권 해석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6. 참고 자료 2(관련 조례 발체)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2011-07-05 조례 제 3469호

(일부개정) 2017-12-28 조례 제 4623호

(일부개정) 2021-02-18 조례 제 5249호 (제명 개정)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1. 무상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개정 2017. 12. 28., 2021. 2. 18.)
 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개정 2017. 12. 28.)
 3.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제5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내용과 기관별 부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삭제 2017. 12. 28.)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전라남●●◆◆◆◆
건명	전라남●●◆◆◆◆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협의회 사업비 직접 사용 가능 여부		

1. 개요

【 (사)○○◆◆◆◆협의회 현황 】

- ◇ 설립 근거 : 「도서관법」 제17조(사단법인 설립 : 2007년 7월)
- ◇ 주요 자원 : 국고보조금(문화체육관광부)+연회비(회원도서관 등급별 000천원~000천원)
- ◇ 조직 구성 : 회장, 운영위원회(00명), 사무국, 00개 시·도 지부
 - 회원 : ○○도서관 등 000개 도서관{전남-전라남◆◆◆◆◆◆(전남지부) 등 00개 도서관}
- ◇ 주요 사업 :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 연구논문 발간, 시·도 지부 활동 지원 등

2. 신청 사유

- ◇ 전라남●●◆◆◆◆이 (사)○○◆◆◆◆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남지부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협의회 지원금과 회원 ◆◆◆ 회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전라남●●◆◆◆◆은 전라남도 산하 사업소 역할과 ◆◆◆협의회 전남지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전남지부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협의회 지원금과 전남지부 회원 ◆◆◆ 회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함.
 - ※ 문화체육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도서관 상호 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 서비스 진흥·도서관의 발전,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협의회 설립을 허가함.
 - ※ 도서관협의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과 지부회를 두며, 지부장은 지부회의에서 선출하고, 지부회는 각 시·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전라남●●◆◆◆◆을 전남지부로 지정함.
- {(사)○○◆◆◆◆협회 정관 제38조 및 제39조}

3. 관련 법령 확인

- ◇ 「도서관법」 제17조
- ◇ 「지방재정법」 제2조·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 ◇ 「(사)○○◆◆◆협의회 정관」 제38조·제39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전라남○○◆◆◆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협의회 사업비 직접 사용 가능 여부 : 불가능
 - ◆◆◆협의회 지원금과 회원 ◆◆◆ 회비로 수행하는 사업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는 ①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②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③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④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 전라남○○◆◆◆은 ◆◆◆협회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과 회원 ◆◆◆으로부터 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사용 할 수는 없음.
 - 다른 기관(○○○교육청) 감사 사례 확인 : 세입세출외 현금 직접 사용 불가능

감사 현황	지적 내용
· 감사 일자 : 2020. 5. 11. · 감사 기관 : ○○○교육청 · 피감 기관 : ○○○○○교육◆◆◆ · 감사 종류 : 정기 종합감사 · 처분 사항 : 현지 조치 -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 부적정 (협의회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이외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고,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교육◆◆◆은 (사)○○◆◆◆협회로부터 협의회 지원금 명목 협의회비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이체받아 회원 ◆◆◆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직접 협의회비를 지출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을 부적정하게 함.

5. 참고 자료 1(관련 법령 발췌)

도서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③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참고 자료 2(관련 정관 발췌)

사단법인 ○○○○○○협의회 정관

제정 2007. 7.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개정 2011. 5.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개정 2018. 8. 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도서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단법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8조(지부설치) ① 협의회는 사·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장과 지부회를 둔다.

② 지부장은 지부회의에서 선출하고, 지부회는 각 사·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부에서 정한다.

제39조(지부에 대한 보조) 협의회는 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행정제재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1. 컨설팅 개요

○ 처분 개요

- 처분일자: 0000. 0. 0.
- 처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조사대상 기간: 0000. 0. ~ 0000. 0.(00개월)
- 위반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 부당 세부내용: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부당청구액: 00,000,000원
-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5일(1/2 감경적용하여 10일→5일 업무정지)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00,000,000원(부당청구액의 2배)
- ※ 과징금 납부기한: 0000. 0. 00.

《 대상기관 현황 》

- 기관명: 00000000
- 대표자: 000
- 소재지: 전남 00군 00면
- 이용현황: 정원 00명, 현원 00명 ※종사자 00명
- 급여종류: 0000시설

○ 지금까지 추진 경과

- 현지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 0000.00.0. ~ 0000.00.0.(4일간)
-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송부(공단→군) : 0000. 00. 0.
- 현지조사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송부(공단→군) : 0000. 00. 00.

-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 0000. 0. 00. / 0000. 0. 00.(청문)
- 수차례 협의(과징금 처분 시 분납 구두 문의) : 0000. 0. ~ 0.
- 최종 면담 실시 : 0000. 0. 00.
- 처분통보 : 0000. 0. 0.

2. 컨설팅 요청 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과징금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했을 시 관련 조항 및 관련 지침의 부재로 행정청에서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처분 당사자에게 답변을 할 기준이 부재함.
-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9조에(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따르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어 개별법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과징금 분할납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법에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 및 횟수를 두어야 할지 어려움이 존재함.
- 이와 달리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적용이 되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는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존재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해당 사유 및 분할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세부 내용은
 1. 노인장기요양법상 과징금 분납에 관한 개별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 대상 기관에서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분할납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을

3. 검토 결과 및 의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는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 ◇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

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하고,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노인장기요양법상 과징금 분납에 관한 개별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 대상 기관에서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는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되어 있을 뿐, 과징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음.

◇ 그러므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붙임1서식)에 같은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00군에 신청하고, 00군은 신청한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신청한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자는 당초 처분대로 서면 통지 후 20일 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00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2. 분할납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을 산정할지에 대하여

- 본 건 과징금 부과 근거 법령 등에 별도의 분할납부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처분기관의 이같은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전까지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취지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

할 납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납부기간 등을 결정하되, 과징금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00군의 일관성 있는 처분을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나와 있는 과징금 분할납부 세부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0000 영업정지 조정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신청 배경】

- 광주·전남지역 연탄공장은 0000과 @@@@ 2곳이 있었으나 0000은 2000. 00. 0.까지 영업정지, @@@@은 갑작스런 폐업 예고에 따라 광주·전남 전지역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 공급에 차질 예상

【저소득층 00보조사업】

- 추진 목적: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사업기간: '23. 10. ~ '24. 4. 30.
 - 지원방법: 디지털쿠폰 지원 (000000공단)
-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가구(3,535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00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

※ 영업정지 사유

-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을 유지해야 함
- 000000공단이 (주)0000을 대상으로 실시한(2022. 11. ~ 2023. 2.) 연탄품질검사 결과 6차례에 걸쳐 연탄 발열량이 기준치인 4,400kcal/kg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0000. 0. 0. ~ 00. 0.)

2. 컨설팅 요청 사유

- 0000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0000. 0. 0. ~ 00. 0.)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영업정지일 이후 연탄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급량 부족으로 광주·전남 저소득층 총 3,535가구(광주 755, 전남 2,780)에 연탄공급 차질 예상
- 0000은 관련법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나 원활한 생산·수급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영업정지 기간 중 2개월을 2024년에 처분하고자 사전 컨설팅 신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3. 신청기관 의견

-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 조정에 대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지만 동종 업종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공급 수급에 차질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차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제3호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또 「석탄산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0000 행정처분 시행 후 환경민원과 매출 감소로 @@@@이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3. 0월부터 생산 중단 등 폐업을 검토 중에 있고, 그로 인해 불확실한 연탄생산이 예상되어 연탄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전남도 00000과 주관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8개기관)하는 등 대책 마련 중에 있으며, 두 업체 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00업체로부터 연탄수급 시 물류비용 증가로 연탄사용가구의 추가부담 발생이 예상됨.

* 전남·광주지역 연탄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최 예정

◇ 따라서 00군수는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면,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 수급 어려움 해소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연탄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중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탄수급 비수기까지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석탄산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시
건명	시내버스 결행 조사결과에 따른 과다지급 보조금 환수 관련		

1. 컨설팅 개요

○ 사건 개요

- 0000. 0. 0000년 (주)0000 운행버스 노선결행 전수조사 착수
- 0000. 0. 00시 대중교통 관련 0000청구사항 감사 실시
- 0000. 00. 감사 결과 통보(결행 전수조사 및 보조금 회수)
- 0000. 00. 감사 청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 0000. 00. 시내버스 결행분석서비스 전산개발 착수
- 0000. 0. ~ 0000. 0. 0000년 ~ 0000년 (주)0000 노선 결행 전수조사 실시
- 0000. 0. 결행 전수조사 완료(59,953건)
- 0000. 0. 결행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0000. 0. 결행조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 0000. 0. (주)0000 결행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

2. 컨설팅 요청 사유

○ (주)0000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

【0000 제출 의견 : 결행내역에 대한 검증 재조사 요청】

- 통보된 결행조사 내역 중 일정기간(0000.0.00.~ 0.00.)만 (주)0000에서 우선 검토한 결과 00시 통보 000건 중 22건만 실제 결행 내역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상 버스노선과 실제 운행 노선의 불일치, 라우터(GPS) 통신 끊김 등으로 버스를 정상 운행하였으나 결행으로 분류된 결과임. 또한 실제 결행 거리와 결행조사 결과의 결행 거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

【00시 검토 결과】

- (주)0000 제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결행내역보다 전수조사한

결행 내역이 과다함을 확인하였음

○ 사전 컨설팅감사 질의사항

- 00시에서 (주)0000에 기 통보('00. 0.)한 결행내역으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명절차를 통해 결행 내역 재확정 및 보조금 환수를 해야 하는지?
- 0000년 ~ 0000년 결행내역을 (주)0000의 소명 후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소명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1년 예상) 보조금 환수가 지연되는데, 결행내역 소명결과에 따라 연도별(0000년, 0000년, 0000년)로 보조금 환수를 추진해도 되는지?

3. 신청기관 의견 등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정식처분 전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통보한 내역은 처분 확정 전 사전통지로, 의견제출이 합리적인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결행내역 재확정 후 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결행내역에 대한 (주)0000 측의 소명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연도별로 순차적인 사전 통지 후 소명에 필요한 의견제출기한을 제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정식처분(환수)을 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용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용자

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 「지방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가. 00시에서 (주)0000에 기 통보('00. 0. 00.)한 결행내역으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명절차를 통해 결행 내역 재확정 및 보조금 환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 00시에서 0000. 0. 00.에 0000년~0000년 시내버스 전체노선 결행 자료를 분석하여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된 보조금 중 결행구간 보조금 회수금액을 산정하고, '사업계획 위반(결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 건'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이므로, 00시 검토결과와 같이 실제 결행내역보다 전수조사한 결행내역이 과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같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처분하되,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임.

나. 0000년 ~ 0000년 결행내역을 (주)0000의 소명 후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소명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1년 예상) 보조금 환수가 지연되는데, 결행내역 소명결과에 따라 연도별(0000년, 0000년, 0000년)로 보조금 환수를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보조금 반환 범위 등을 정확히 재산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 환수가 지연되는 것이 예상되나 소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임.

- 또한 반환 보조금의 원활한 환수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법」 제 3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농공단지 내 공유지 점유 공장 조치방안 관련		

1. 컨설팅 개요

○ 사건 개요

- 00농공단지 공유지에 000000 설치 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중 인접 공장건물 공유지 침범 발견('00. 0.), 건물 소유자 확인서 징구(0000 000)
- 정확한 점유면적 확인을 위해 지적측량 실시('00. 0. 0) 결과 점유면적은 총 000.0㎡(공장건물, 진입로)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00. 0. 00.), 0,000,000원(5년 변상금)
- 건물 소유자 의견서 제출('00. 0. 00.): 경매를 통하여 건물을 취득하여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가 없음,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과도함
- 건물 소유자 면담('00. 0. 00.)

(소유자) 0000년 건물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도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동안 00군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음. 그리고 계속 운영해 오던 공장을 중단하고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00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면 변상금도 모두 납부하고 바로 매입하겠음

(00군) 00군에서도 무단점유 사실을 금번 000000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일단 무단점유 사실은 측량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고 추후 대책 논의

○ 조치계획

-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통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제83조를 적용하여 변상금의 징수와 함께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임
- 하지만 현 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

라 0000. 0. 0.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 위치한 지원시설부지로 같은 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지원시설)이며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공장)에 해당되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매각금지 대상이 아님

- 또한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를 입주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점유면적을 제외하여도 000000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임**
- 이에 관련 법령과 공장 철거 후 신축 시 입주업체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무단점유 중인 입주업체가 **변상금을 납부하면 원상복구나 철거명령을 하지 않고 해당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함**
- 무단점유 건물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전체 농공단지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입주업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장건물 철거 후 신축시 예상비용

- 철거비용 : 00백만원(m²/00만원)
- 건축비용 : 0,000백만원(m²/0백만원)

2. 컨설팅 요청 사유

- 공장건물이 점유한 공유지를 입주업체의 의견대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지원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유지를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매각이 가능한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분할한 후에 매각(분양)**이 가능하게 됨
-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위한 **용역비용**(군비 약2천만원)도 수반되고 입주업체들을 대표하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컨설팅

팅감사를 요청함

3.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83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 판례*에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 판단.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그리고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판례*에 따르면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 살펴보면, 군유지를 무단점유한 현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0000년 경 매로 해당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 그간 군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00군은 해당 공장건물 부지와 연결한 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000000 건립사업을 하기 위해 0000년 0월경 건축설계 용역 중 공장건물의 군유지 침범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무단 점유 상태의 해소를 위한 원상복구 명령 등 추가적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선 본 건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함으로써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아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다면 실제 공장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와 공장주와 직원들 생계에 심각하고도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 철거 후 신축 시 소요 비용 등 군유지 무단점유 해소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장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 침해의 크기가 「공유재산법」과 「산업집적법」에서 목적

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처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하여 과도한지 여부 등을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 ◇ 그 결과 변상금 부과 이외에 추가로 철거 및 원상복구라는 제재 방안이 공익을 능가하는 과도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변상금 부과 외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조치방안으로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매각 또는 임대 등으로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먼저 그와 같은 조치방안이 00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다음으로 현재 해당 군유지(용도: 지원시설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000000 건립·운영 사업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지는 않은지, 즉 매각 또는 임대로 공장건물의 공유재산 점유 면적을 000000 건립부지에서 제외하여도 건축과 완공 후 시설물 이용 및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단지 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본 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과 그와 같은 조치방안이 향후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	신청기관 (부서명)	●●군
건명	◆◆◆◆◆ ○○○○ 변경 허가의 위법성 인지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1. 개요

【 행정처분 대상 업체 현황 】

- ◇ 업체명 : ㈜●●●●●(대표 ■■■■)
- ◇ 업종 : ◆◆◆◆◆ ○○○○
- ◇ 소재지 : ●●군 ●●읍 ●●●●길 00-00(●●리 000-0번지)
- ◇ 허가 차량 : 0000년 0월 현재 00대(일반형 00, 변형 0, 특수용도형 00)
※ 변경허가 : 0000년 0월 ~ 0000년 0월 00대 증차(○○○○로 구조변경)
- ◇ 위법성 인지 : ○○○○○○ ○○○○○○과-0000(0000. 0. 00.)
※ 0000년도 불법 증차 TF 1차 조사 결과 송부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 ◇ 행정처분 : 허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정지·사업 일부정지, 감차 조치 등

2. 신청 사유

- ◇ ■■■■■시 ■■■■■장의 0000년 0월 ~ 0000년 0월 ◆◆◆◆◆ ○○○○ 변경허가(구조변경 ○○○○ 00대 증차)에 대해 0000년 0월 ○○○○○가 위법성을 인지했고, 8년이 지난 변경허가를 ●●군에서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

- 구조변경된 ○○○○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¹⁹⁾로 분류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 제3조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감차 조치 가능(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조변경 ○○○○ 00대를 증차하는 변경허가에 대해 ■■■■■시 ■■■■■ 담당 공무원이 법리 해석을 잘못하여 불법 증차한 것으로 판단

증차 일자	합계 (대)	2013. 9. 12.	2013. 9. 17.	2013. 10. 4.	2013. 10. 16.	2013. 10. 30.	2013. 11. 1.	2013. 11. 12.	2013. 11. 14.	2013. 12. 4.	2013. 12. 12.	2013. 12. 20.	2013. 12. 27.	2014. 1. 3.	2014. 1. 22.
수량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군은 증차를 위한 변경 허가가 위법하지만 8년이 지나 「화물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행정 처분(허가취소 등)을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제18조 제2항의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에 위반된다고 판단

19)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일반형·덤프형·변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 운송용 화물자동차

3. 관련 법령 확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조·제16조·제19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 「행정기본법」 제12조·제18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변경허가의 위법성 인지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가능 여부 : 가능
 -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구조변경 사다리차 증차 불가능, 위법²⁰⁾하게 변경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²¹⁾(허가취소 등) 가능, 행정처분 종류는 ●●군의 재량에 따라 선택 가능
 - 2021년도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TF 1차 조사 결과 송부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근거	이점	주요 내용
○○○○○○ ○○○○○○과 -0000 (0000. 0. 00.)	0000. 0. 00. ◇◇◇◇◇ ◆◆ → ●●●●● ●●군	· 불법 증차 의심 차량 현황 송부 · 사실관계 및 불법 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및 조치 결과 제출

- 행정처분 대상 화물자동차 변경 이력 예시(00대 중 ●●00바0000)

구분	변경사항								
본거지 이동	☐☐ ☐☐구 (0000. 00. 0.)	➡	■ ■ △△시 (0000. 00. 00.)	➡	■ ■ ☐☐시 (0000. 00. 00.)	➡	◇◇ ◆◆ (0000. 00. 00.)	➡	●● ●●군 (0000. 0. 00.)
양도 양수	(주)☐☐ ☐☐☐☐ (0000. 00. 00.)	➡	(주)☐☐ ☐☐☐☐ (0000. 00. 0.)	➡	(주)○○○○○ (0000. 0. 00.)	➡	(유)☐☐ ☐☐☐☐ (0000. 00. 00.)	➡	(주)●●●●● (0000. 0. 00.)
대폐차 22)	○○○○○(특수용도형) 0000. 0. 00.(■ ■ △△시)			➡	▲▲▲ ▲(밴형) 0000. 00. 0.(◇◇ ◆◆)				

- 대법원 판례(2015도11040, 2016. 4. 15.)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 불가능

판결	판결 요지
· 공급이 제한되는 차량을 대폐차 방식으로 증차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어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20) 주체상의 하자, 질적상의 하자, 형식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참조 제18조 관련)

21) 허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정지·사업 일부정지, 감차 조치,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차량 운행정지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정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질의 회신(2021. 11. 1.) 확인 :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질의 내용(요약)	회신 내용(요약)
• 과거 불법 증차 관련 행정처분 미부과 차량에 대한 강제적 행정처분 요구 사유 • 운수사업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서 부정한 방법의 의미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정확한 명칭	• 2004년 허가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적법하지 않은 증차·대폐차 사례에 대하여 불법 증차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적의 조치하는 사항임. • ‘부정한 방법’이란 행정청의 허가(변경허가)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분류하며, 특수자동차는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질의 회신(2021. 5. 4.) 확인 :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질의 내용(요약)	회신 내용(요약)
• 2012년~2014년 구조변경된 사다리차를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2015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 증차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증거 없음’으로 처리되었는데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이 가능한지?	• 2004. 4. 21. 허가제 시행 이후 일반형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된 ㉠㉠㉠㉠에 대한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불가능 • 2012년~2014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가 영업용으로 신규 공급(허가)된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형사상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는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행정행위 취소 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여부 검토 가능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질의 회신(2019. 5. 24.) 확인 : 양수자에게 행정처분 가능

질의 내용(요약)	회신 내용(요약)
• 다른 시·군에서 불법 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불법 증차)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 양수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 선의의 양수자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환수 조치하여야 함.

- ㉠㉠군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확인 :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변호사	자문 의견(요약)
▽▽▽ 변호사 (0000. 0. 0.) - ㉠㉠군 자료 -	• 2010년 5월~2013년 5월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대폐차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등록번호를 부착해 불법 증차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대법원에서 행정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행정처분은 가능(허가취소 등) •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은 그 기준 시점의 법령을 따르되, 처분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현재 법령 기준을 적용

- 국토교통부 전화 상담(▲▲▲ 주무관) 결과 :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상담자	상담 내용(요약)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주무관 (0000. 0. 00.)	· 신규 공급(허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조변경 ㉠㉡㉢에 대한 ㉣㉤㉥시 ㉦㉧㉨㉩장의 변경허가(00대 증차)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됨. · ㉪㉫㉬ 담당 공무원의 법리 해석 잘못으로 인한 증차(변경허가)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 ·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운송업체가 변경되어도 양수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허가취소 등) · 행정처분 여부와 종류에 대한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이 결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임.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5. 5. 26., 2016. 6. 21., 2018. 7. 3., 2018. 11. 27.>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8. 12. 31., 2022. 1. 28.>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용 도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시행 2013.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호, 2013. 4. 1., 제정.]

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뱅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 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제외)을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소방용 차량

(5)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6)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항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폐차 금지)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 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일반행정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시
건명	공익사업 이주대상자 수의계약 토지매각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 사업 개요 (00 00지구 000000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전남 00시 00면 00리, 00리 일원 - 사업비 : 00,000백만원(국비 00,000 지방비 00,000) - 사업주체 : 00시 - 내용 : 하천정비 L=0.9km,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2개소, 보 2개소 등 ※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00 00지구 000000 종합정비사업 이주단지 부지조성공사) - 위 치 : 전남 00시 00면 00리 0000번지 - 사업주체 : 00시 - 내용 : 이주단지 조성			
2. 컨설팅 요청 사유			
○ 집중호우에 의한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를 받은 지구로, 00 00지구 000000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일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임. ○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자 함.			
3. 신청기관 의견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			

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고,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토지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공익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고, 같은법 [별표] 제2호 (59), (61)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됨.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해이주대책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 따르면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를 “특정시설용지”로 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9호에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므로 ‘00 00지구 000000 종합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수가 10호 이상으로서 「재해이주대책법」 제11조 및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고, 그 방안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라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택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이주대책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00 0000사업소
건명	도로공사 현장 발생 폐자재(도로 경계석) 재활용 가능 여부		
1. 컨설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 지방도 000호선 00시 0면 보행로 정비사업 - 위치 : 전남 00시 0면 00리 000-00번지 일원(지방도 000호선) - 사업비 : 000백만원(도급 000, 관급 00, 폐기물 0, 기타 00) - 사업량 : 보행로정비 L=0.3km - 사업기간 : 0000. 0. 00. ~ 일시정지*(0. 00.) * 일시정지 사유 : 현장 민원 발생			
2. 컨설팅 요청 사유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현장 발생 민원 처리과정에서 폐기물(도로 경계석)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양호한 도로경계석을 00시 0면사무소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없이 도로 경계석을 00시 0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컨설팅 받고자 함 ※ 폐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폐기물처리비 약 2백만원 예산 절감			
3. 검토 결과 및 의견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예규) II-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에 따르면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은 “폐블록”으로 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및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블록은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1)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목 1) 가)에 따르면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1)의 재활용 기준은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3) 반드시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00시 0면장은 0000. 0. 00. 0000 0000사업소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방도 000호선 00 0면 보행로 정비사업」 관련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도로경계석을 향후 0면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하고자 지원 요청함.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

- 그리고 해당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0000 0000사업소 00지소는 폐기물 처리비용 2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00시 0면은 폐기물을 공공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에 부합.

- 그러므로 해당 도로 경계석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예규) II-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에 따른 “폐블록”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면, 0000 0000사업소 00지소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00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00시 0면장은 해당 도로 경계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임.

사 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시
건명	00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관련		
1. 컨설팅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00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 위 치 : 00읍 00마을 일원 - 사업기간 : 000. ~ - 사 업 비 : 00백만원/연(00시 이전재원)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00가구), 감시원 인건비, 조경사업비, 회관 운영비, 영농비 지원 등 ○ 사업 경위 - 00시-00마을 지원금 지원 협약 체결 : 0000. 00. 00. · 00시 00동 00000매립장과 관련하여 00시 00마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매년 주민복리증진비 00만원을 매립장 종료시까지 지급 - 지원금 집행 절차(협약에 따름) ① 00시에서 00시로 자금을 이전하고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사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사업 시행을 00시에 요구 ③ 집행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00시에 제출 ④ 00시는 익년 2월말까지 00시에 집행결과 통보			
2. 컨설팅 요청 사유			
○ 00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 현황 - 00시 00마을 주민들이 00시 매립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00시와 00마을은 0000년에 “협약”을 통해 매년 00만원의			

지원금을 00시에서 00시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전하여 00시에서 00마을로 매년 사업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검토 사항 : 00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해당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00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조례로 정한 시설로 지정함

※ 00시 00동 000-0번지 등에 위치한 00시 00000매립장은 조성면적 000,000㎡으로 조례에 포함되는 시설임.

(쟁점 1) 00시 조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지정했음에도 「폐기물시설촉진법」을 따르지 않고 “협약”이 먼저 이루어졌으니 “협약”으로만 00마을협의회에 지원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쟁점 2) 협약상 00시에서 00시로 사업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전하여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하여

- 301-14(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의되어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지방보조금”으로 정의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과 질의결과 301-14 보상금,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음

※ 현재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목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쟁점 3) 조례를 따르지 않고 “협약”으로만 지급되는 사업비는 어떠한 예산 목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 00시와 00도 00군의 경우 당초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제2조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주변마을에서 지원금을 요청하여 같은법 제2조제2호 가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함에 따라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음. 00시의 경우도 00시 조례에 따라 해당 매립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포함됨
- 00군의 경우 0000년 하반기 0000도 감사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적받았으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후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주변영향 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음
- 000도 00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해당 市로 한정하지 않고, 타 시군도 포함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쟁점 4) 00시는 초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협약”을 맺어 00시를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00시 조례로 생활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하였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3. 신청기관 의견

- 00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협약”이 아닌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00시가 아닌 00시에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3)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됨.
- 「00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00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3)에 따른 시설은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선별시설로 되어 있음.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

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별표 11]에 따르면 **기타보상금(301-14)**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인 경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

◇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

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00시와 00마을 간 「00000매립장 주변 00마을 민원 관련 협약서」(0000. 00. 00., 이하 “협약서”)에 따르면 00시는 00시에 자금을 이 전하는 방식으로 00마을에 매년 주민복지증진비 00만원을 지급하고, 00시는 00마을의 요구에 따라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 준다고 되어 있으며, 00마을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전체 의사에 따라 00시에 현금지급 또는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00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00시는 익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00시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음.

-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 ① 00시 조례로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지정했음에도 「폐기물시설축진법」을 따르지 않고 “협약”이 먼저 이루어졌으니 “협약”으로만 00마을협의회에 지원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④ 00시는 초기에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조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협약”을 맺어 00시를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00시 조례로 생활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하였으므로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 00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조 및 「00시 폐기물시설축진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00시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폐기물시설축진법」에 정한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함.

- 그리고 00시와 00마을(00시 소재) 간 협약서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자금(0천만원)은 실질적으로 00시 00000매립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인 00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성격으로 「폐기물시설축진법」과 「00시 폐기물시설축진 조례」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00시가 00시를 통해 00마을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00시가 주변영향지역인 00시 00마을 주민 등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있고, 0000년의 협약서는 당시 제도적 여건 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집단민원 해소와 피해보상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00시, 00시의회, 00시, 00시의회, 주민대표 등이 모여 협의하고 00시와 00마을 주민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임.

② 협약상 00시에서 00시로 사업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전하여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 ◇ 00시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원칙적으로 직접 운용·관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주변영향지역이 00시 관할이고 00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은 00시의 자치사무라는 점과 0000년 이후 00년간 이어진 지원방식에 대한 00마을의 신뢰보호 등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00시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법」 제7조에 따라 00시는 지원사업 추진에 행정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에 따라 00시와 00시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역할 분담 등을 협의하여 00시는 00시로 부담금을 이전하고, 00시가 00마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조례를 따르지 않고 “협약”으로만 지급되는 사업비는 어떠한 예산 목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은 00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와 제22조, 「00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00시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00시로 이전된 지원자금은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00시로부터 이전된 00마을 지원 예산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자체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11]에 따라 기타보상금(301-14)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
건명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 가능 여부		

1. 개요

【 도시개발사업 현황 】

- ◇ 사업명 : ◎◎ ○○○지구 도시개발사업
- ◇ 시행자 : ◆◆◆◆◆◆◆◆
- ◇ 위치 : ◎◎시 ●●면 ○○리 일원
- ◇ 사업규모 : 000천㎡(계획인구 00,000명, 0,000세대)
- ◇ 사업비 : 0,000억원(공사비 000, 토지매입 00, 기반시설 00, 기타 00)
- ◇ 지장물 보상 : 건축물 000건, 기타 시설물 000건, 수목 000,000주

2. 신청 사유

-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 보상 및 이주민 이주 완료 후 이주민이 방치한 생활폐기물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에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주 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였으나 이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방치 후 이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주민과 갈등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후속 공사 또한 지연되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발생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 이주민 이주 전 생활폐기물 성상 및 수량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주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주민 이주 후 석면폐기물 조사 시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폐기물 처리 용역에 포함하는 설계변경 후 생활폐기물 처리
 - 이주민과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갈등 해소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방 등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열람·공고에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조건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 등 조건은 따로 없으며, 보상과정에서 구두 설명**

3. 관련 법령 확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8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4. 검토 결과 및 의견

◇ 이주민 방치 생활폐기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① 컨설팅 감사 의견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처리가능하고, 처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함. 다만,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에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함.

② 제도 개선 권고

- 대상 : 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개선
- 내용 : 열람·공고에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신청 및 지급 시기·방법을 포함 공고하여 이주민과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 사전예방

·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 및 방치 시 처리비용 제외 후 주거 이전비 등 지급 고지

예시) 사업지구 외로 이주 완료 후 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등

- 대법원 판례(2018다256313, 2021. 5. 7. 선고) 확인 :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

청구 취지(요약)	판결 내용(요약)
·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 이전을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사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임.

- ●●도 ○○○○○○○○○ 사례 확인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신청 별도 안내

구분	내용
· 지급대상	· 주거이전비 : 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 실제 거주 후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 이사비 : 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다 이주하게 되는 소유자 및 세입자
· 신청시기	· 사업지구 외로 이사 완료 후 신청
· 지급시기	· 사업지구 외로 이사를 완료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 서류 실질 심사 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공통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감 도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예금통장 등 · 주거이전비 : 건축물대장 · 이사비 : 가입전화증명서, 가스요금 완납증명서, 전기 폐전 및 요금 완납 증명서, 상수도 단수증명원(급수·폐전신청서), 분노처리 영수증, 거주가옥 열쇠 등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⑤ (생략)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기준	이 사 비			비 고
	임금	차량운임	포 장 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1. 임금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임금+차량운임) × 0.15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00	신청기관 (부서명)	●●시
건명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중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여지 환매 가능 여부		

1. 개요

【 환매 대상 필지 현황 】

- ◇ 위치 : ●●시 ●●읍 ◇◇리 0000번지
- ◇ 지목/지적 : 답 / 000㎡
- ◇ 취득사유 : 도시계획도로 중로 0-00호선 개설사업 편입
- ◇ 취득일 : 0000. 0. 00.
- ◇ 환매권 발생일 : 0000. 00. 00.(중로 0-00호선 개설공사 준공)
 - 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리 0000번지 000㎡ 중 000㎡는 도로 개설에 사용되고 000㎡는 잔여지로 관리 중

2. 신청 사유

◇ ●●시는 ●●읍 ◇◇리 일원 중로 0-0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 잔여지의 토지 원소유자가 환매를 요청함에 따라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0000. 0. 00. ●●읍 ◇◇리 0000번지 000㎡를 매입 하였으나 0000. 0. 0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면서 도로 편입 면적으로 000㎡를 확정하고, 000㎡는 도로구역에서 제외함.
- 0000. 0. 00. 토지 원소유자가 신규 개설 도로와 본인 소유 농경지²³⁾와의 사이에 시유지(잔여지)가 위치해 농경지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유지(잔여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0000. 0. 0. 농경지를 타인에게 매각함.
- ●●시는 잔여지가 도시계획도로 0-000호선에 일부 저촉되어 환매하더라도 도로개설 시 다시 매입해야 되는 등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10년 이내에 그 토지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토지보상법²⁴⁾ 제91조).

23) ●●읍 ◇◇리 0000-0번지, 답, 000㎡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3. 관련 법령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9조·제24조·제91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중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여지 환매 가능 여부 : 가능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사업완료 후 필요 없게 된 경우라면 **환매**는 가능하고, 종로 0-000호선에 저촉되었다는 사유로 **환매를 거부할 수는 없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은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당해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가 더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함.

※ 대상 토지는 도로 개설에 필요하여 매입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매입한 잔여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발생한 잔여지로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로 볼 수 있음**.

· 대상 토지가 저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종로 0-000호선은 당초 토지를 매입하게 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으며, 사업 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의 환매기간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기간 내 환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환매 대상 토지 현황(●●시 자료) : 종로 0-00호선 비 저촉 및 0-000호선 저촉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위 치 도	토 지 이 용 계 획

－ 대법원 판례(2021. 9. 30. 선고2018다282183) 확인 : ‘당해 사업’ 등의 의미

판시 내용	판결 요지
· 환매권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당해 사업’은 협의 취득 등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는 협의 취득 등의 목적이 된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함. ·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판례(2010. 9. 30. 선고2010다30782) 확인 : 공익사업의 변환 인정되는 경우에 환매권 제한

판시 내용	판결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의 변환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임. ·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음.

－ ●●시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확인 : 환매 사유 발생 및 환매권 행사 제한 어려움

변호사	자문 의견(요약)
법무법인(유) ●●● ●●● 변호사 (2022. 8. 3.) - ●●시 자료 -	· 이 사건 공익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환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 환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공익사업인 중로 0-00호선 사업으로 편입되었지만 현재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중로 0-00호선과 저촉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로 0-000호선의 도시계획과 일부 저촉되나, 중로 0-000호선은 당초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도시계획 결정만 되어 있어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3.~8. (생략)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⑥ (생략)

부록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21.] [국무총리훈령 제811호, 2022.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044-205-11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접수 및 소관)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③ 시·도지사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8. 12.>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9. 8. 12.>

1.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관련 사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⑥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5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문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8. 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④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회 및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면제)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부칙 <제00811호, 2022. 3.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6-10-27 훈령 제 1369호

(일부개정) 2019-09-19 훈령 제 14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

3.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

가.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개정 2019. 9. 19.)

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개정 2019. 9. 19.)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19. 9. 19.)

4. (삭제 2019. 9. 19.)

가. (삭제 2019. 9. 19.)

나. (삭제 2019. 9. 19.)

다. (삭제 2019. 9. 19.)

제3조(기관의 책무) (개정 2019. 9. 19.) ① 도지사 및 신청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권자) (개정 2019. 9. 19.)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9.)

1. 도 본청, 소속기관 (개정 2019. 9. 19.)
2. 도내 시·군 (개정 2019. 9. 19.)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19. 9. 19.)
4.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개정 2019. 9. 19.)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 (개정 2019. 9. 19.)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③ 도 본청, 소속기관은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시·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신설 2019. 9. 19.)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9.)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 소관사무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군 소관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 9. 19.)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9. 19.)

④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9. 19.)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신설 2019. 9. 19.)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9. 19.)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9. 19.)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19. 9. 19.)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개정 2019. 9. 19.)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통보) (개정 2019. 9. 19.)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등 해석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9. 9. 19.)

③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회 등 자문) (개정 2019. 9. 19.)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개정 2019. 9. 19.) ①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기관 (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	--	-----	--------------

건 명	
-----	--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그 밖의 사항(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명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행일: 2023. 12. 31.

발행처: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491)

편집인: 감 사 관 김세국

청 령 지 원 관 유영민

컨설팅감사팀장 김홍렬

주 무 관 박상구

주 무 관 배유선

